# 2018년도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 I. 회부개요

1. 의안번호 : 제2243호(예산안), 제2244호(기금안)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17년 11월 8일

4.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0일

# Ⅱ. 검토의견

### 1.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가.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안 편성 개요

 2018년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01억 9 천 7백만원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31조 7,428억 7천 4백만원의 0.6%에 해당되는 규모이며, 2017년 예산 대비 225억 2천만원(14.3%)이 증액된 것임.

####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증감율
(최종예산) ①	예산(안) ②	② - ①	
157,677	180,197	22,520	14.3

### 나.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최근 5년간 변동추이

- 2018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예산의 세입구조는 주로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에 의한 것으로, '국고보조금'은 1,210억 6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6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세외수입'이 585억 1천 7백만원으로 전체의 32.5%로 나타남.
-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의 최근 5년간의 변동 추이를 살펴 보면, 국고보조금의 절대 규모는 201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2016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6%가 감소 하였다가 `17년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 4.7% 증가하였음. 상대적 비율은 2014년 60.5%에 서 점점 증가하여 2017년 73.3%로 가장 높았으며, 금번

2018년 예산에서도 다소 낮아져 67.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2018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78	2014	2015	2016	2017		2018	
구분	2014	2013	2010	2017	예산안	증감	증감율
계	126,168	15,660	154,309	157,677	180,197	22,520	14.3
계	(100%)	(100%)	(100%)	(100%)	(100%)	22,320	14.5
비이스이	48,796	50,997	50,920	41,375	58,517	17 1 / 2	41.4
세외수입	(38.7%)	(32.3%)	(33.0%)	(26.2%)	(32.5%)	17,142	41.4
<b>u</b> <del>-</del> 7	76,311	105,970	102,341	115,613	121,006	F 202	4.7
보조금 	(60.5%)	(67.2%)	(66.3%)	(73.3%)	(67.2%)	5,393	4.7
보전수입등	1,061	693	1,048	689	674	۸ 1 ۲	^ 2 2
내부거래	(0.8%)	(0.4%)	(0.7%)	(0.4%)	(0.4%)	△15	△2.2

\*주) ( )괄호 안은 각해년도 예산의 구성비를 말함

○ 2018년 세입예산 구성을 살펴보면, `17년에 비해 '세외수입'이 171억 4천 2백만원(41.4%)이 늘어났으며,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2.5%로 커졌음.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53억 9천 3백만원이 늘어나 전년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67.2%를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2.2% 줄어들었음..

# 2.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 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안 편성 개요

○ 시민건강국 소관 2018년 세출예산은 4,445억 4천 1백만 원으로, 2017년 최종예산 4,359억 2천 4백만원 대비 2.0% 증액된 수준임.

###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증감율
(최종예산) ①	예산(안) ②	② - ①	
(x115,156)	(x121,006)	(x5,850)	2.0
435,924	444,541	8,617	

### 나. 최근 5년간 세출 예산 변동추이

○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31조 7,428억원)의 1.4%에 해당하며, 이는 2017년의 세출예 산 구성비와 같은 수준임.

### 〈최근 5년간 서울시 총예산 및 시민건강국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78	기상 II STI	시민건강국 예산						
구분	서울시 총예산	예산총액	서울시 총예산대비율(%)	전년대비증감율(%)				
2014	25,522,763	321,662	1.3	4.2				
2015	26,411,590	427,667	1.6	33.0				
2016	27,503,758	395,822	1.4	-7.4				
2017	31,913,583	435,924	1.4	10.1				
2018	31,742,874	444,541	1.4	2.0				

<sup>※</sup> 사업비 및 부서운영비를 포함한 전체예산, 전년도 최종예산액 기준

- 최근 5년간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 예산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예산 총액 기준으로 볼 때, 2014년 3,216억 6천 2백 만원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4,445억 4천 1백만원으로 증가하여, 4년 사이에 1,128억 7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이는 2014년 대비 1.38배가 증가한 것으로, 동 기간 동안 서울시 총예산 규모가 1.24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시민건 강국 소관 예산은 상대적으로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시민건강국 예산규모가 서울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살펴보면, 2013년 1.3%였던 것이 2018년에는 1.4%로 소폭 증가하였음.

<sup>※</sup> 서울시 총예산은 각 연도별 예산서(안)에 나온 전년도 최종예산 자료를 사용함

#### 〈2018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2018년도	
구분	2014년	! 2015년 2016년 2		2017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	증감율 (%)
ᄎ게	321,661	427,665	395,821	435,924	444,541	0.617	2.0
총계	(100%)	(100%)	(100%)	(100%)	(100%)	8,617	2.0
행정	7,337	7,307	7,545	7,749	7,804	55	0.7
운영경비	(2.3%)	(1.7%)	(1.9%)	(1.8%)	(1.8%)	55	0.7
ᆌᄆᅘᄃ	872	1,052	850	2,078	2,012	-66	-3.2
재무활동	(0.3%)	(0.2%)	(0.2%)	(0.5%)	(0.5%)	-00	-3.2
TL어티	313,452	419,306	387,426	426,096	434,725	9 620	2.0
사업비	(97.4%)	(98.0%)	(97.9%)	(97.7%)	(97.8%)	8,629	2.0

<sup>\*( )</sup>안은 총계 대비율을 말함

○ 시민건강국 세출구조는 연례적으로 97% 이상이 사업비 예 산으로 구성됨.

### 다.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증감사유

- 최근 5년간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2015년도 메르스 추경 이전까지 소폭 증가해 오다가, 2015년에 메르스 추경 으로 인해 큰 폭 증가하여 2016년도 세출예산의 경우 전년 도에 비해 8%나 감소되어 편성되었으며, 금번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2% 증가하였음.
  - 2015년 메르스 추경의 결과로 2016년 대부분의 예산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2017년도 하반기 추경을 포함 하여 2018년에는 다시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 라.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

- 2018년 시민건강국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예산이 시민건강국 전체 예산의 33.7%(1,496억 9천 4백만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생활보건과 29.1%(1,292억 2천 6백만원), 건강증진과 24.5%(1,091억 3천 3백만원), 보건환경연구원 3%(134억 6천 8백만원), 서북병원 3%(134억 6천 5백만원), 식품정책과 2.5%(109억 6천만원), 어린이병원 1.8%(77억 9천 2백만원), 은평병원 1.7%(73억 7천 4백만원), 동물보호과 0.8%(34억 2천9백만원) 순으로 나타남.
  -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은 보건의료정책과와 생활보건과, 건 강증진과가 전체의 87.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시립 병원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민건강국의 사업과 예산이 운 용됨을 보여줌.

# 〈시민건강국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	)18년 예산	안
부서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
* 71	321,662	427,666	395,821	435,924	444,541	0.617	2.0
총계	(100%)	(100%)	(100%)	(100%)	(100%)	8,617	2.0
보건의료	116,449	167,878	143,178	144,237	149,694	F 4F7	2.0
정책과	(36.2%)	(39.3%)	(36.2%)	(33.1%)	(33.7%)	5,457	3.8
건강	69,016	82,608	85,633	100,994	109,133	0.120	0.1
증진과	(21.5%)	(19.3%)	(21.6%)	(23.2%)	(24.5%)	8,139	8.1
식품	6,434	7,244	8,706	9,659	10,960	1,301 13	13.5
정책과	(2.0%)	(1.7%)	(2.2%)	(2.2%)	(2.5%)	1,301	13.5
생활	78,580	112,275	104,813	128,475	129,226	751	0.6
보건과	(24.4%)	(26.3%)	(26.5%)	(29.5%)	(29.1%)	731	
동물	1,859	2,534	3,179	4,939	3,429	△1,510	-30.6
보호과	(0.6%)	(0.6%)	(0.8%)	(1.1%)	(0.8%)	△1,310	-30.0
보건환경	13,875	18,766	14,838	14,121	13,468	△653	-4.6
연구원	(4.3%)	(4.4%)	(3.7%)	(3.2%)	(3.0%)	△033	-4.0
어린이	16,304	15,429	15,498	13,807	7,792	△6,015	-43.6
병원	(5.1%)	(3.6%)	(3.9%)	(3.2%)	(1.8%)	△0,013	-43.0
<del>인</del> 명 병원	7,659	7,545	7,026	6,836	7,374	538	7.9
병원	(2.4%)	(1.8%)	(1.8%)	(1.6%)	(1.7%)	JJ0	7.3
서북 병원	11,481	13,384	12,945	12,856	13,465	609	4.7
병원	(3.6%)	(3.1%)	(3.3%)	(2.9%)	(3.0%)	005	⊣./

<sup>\*( )</sup>안은 총계 대비율을 말함

○ 각 과별, 주요 증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시민건강국 부서별 사업수 및 주요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개 , %)

	2018년도	17년		18년 시	·업수		
구분	예산안	사업수	총계	증	감	동일	주요 증감사업 현황(5억 이상)
전체	444,541	188	204	96	60	48	
보건 의료 정책과	149,694	59	66	37	13	16	○증액 -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위탁 운영 653백만원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1,410백만원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1,670백만원 -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2,800백만원 - 정공보건의료재단 운영 811백만원 -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748백만원 -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628백만원 -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720백만원 -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597백만원 ○감액 - 보건지소 확충지원 △1,760백만원
건강 증진과	109,133	25	33	16	12	5	○증액 - 학생및아동치과주치의 519백만원 - 방문건강관리사업 4,875백만원 -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13,982백만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11,889 백만원 - 찾동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운영 5,184백만원  ○감액 -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1,048백만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4,290백만원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치료비 지원 △530 - 모자보건사업-난임부부지원 △ 18,667백만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553

	2018년도	17년		18년 시	l업수		
구분	예산안	사업수	총계	증	감	동일	주요 증감사업 현황(5억 이상)
식품 정책과	10,960	20	22	11	4	7	○ 해당없음
							○증액 - 여성이 안전한 공중화장실 설치(시민참여) 1,000백만원 -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국가예방접종 실시
생활 보건과	129,226	32	33	9	11	13	○감액 - 국가암검진 △4,163백만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824백만원 -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 리 △1,887백만원 - 결핵관리-보건소결핵관리사업 △ 1,711백만원
동물 보호과	3,429	15	10	5	3	2	○감액 -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 △523백만원
보건 환경 연구원	13,468	25	29	9	15	5	○ 해당없음
어린이 병원	7,792	5	4	3	1	0	○감액 -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 △ 5,554백만원 - 어린이병원 석축보강공사 및 본 관동 공간재구성 사업 △903백만원
명 인 병	7,374	4	4	4	0	0	○ 해당없음
서북 병원	13,465	3	3	2	1	0	○ 해당없음

<sup>※</sup> 기본경비, 재무활동비는 단위사업수에서 제외

# 마. 국고보조 사업과 순수 시비사업 예산사업 비교

○ 2018회계연도 기준 시민건강국 소관 사업 중, 국고보조금 사업비와 순수 시비 사업비간의 예산 비율은 62.9 : 37.1 로 나타남. - 다시 말해, 시민건강국 사업 예산의 63% 가량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법정 의무 준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순수 서울시에서 가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는 약 37%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국고보조금 사업 및 순수 시비 사업의 예산 및 사업수 현황〉

(단위: 백만원)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		사업	ゴ수				
부서	2017년	2018년	전년대비 증감액	2017년	2018년				
보건의료 정책과	35,101	37,640	2,539	25	22				
건강증진과	78,109	82,572	4,463	22	25				
식품정책과	6,951	6,817	△134	12	11				
생활보건과	125,484	125,651	167	23	22				
동물보호과	1,702	1,411	△291	3	2				
보건환경 연구원	3,967	4,402	435	21	19				
어린이병원	-	3,840	3,840	1	0				
은평병원	-	4,319	4,319	0	1				
서북병원	7,034	6,894	△140	1	1				
소계	258,348 (60.6%)	273,546 (62.9%)	15,198	108	103				
순수 시비 시	업								
		예산		사임	<b>검수</b>				

		예산	_	사업수		
사업명	2017년	2018년	전년대비 증감액	2017년	2018년	
보건의료 정책과	108,093	111,045	2,952	45	44	
건강증진과	22,341	26,475	4,134	14	8	
식품정책과	2,120	3,339	1,219	11	11	
생활보건과	2,372	2,683	311	14	11	
동물보호과	3,206	1,973	△1,233	13	8	
보건환경 연구원	8,131	6,855	△1,276	10	10	
어린이병원	12,563	2,730	△9,833	5	3	

은평병원	5,607	1,841	△3,766	4	3
서북병원	3,315	4,149	834	1	1
소계	167,748 (39.4%)	161,090 (37.1%)	△6,658	117	99
총계	426,096 (100.0%)	434,636 (100.0%)	8,540	225	202

- **\* 시비는 기본경비 및 재무활동비 제외된 예산임**
- \* ( )안은 총계 대비율을 말함
- 한편, 국비보조금 사업과 순수시비 사업을 사업수로 구분해 보면, 2018년 기준 총 202 가운데 국비 매칭사업은 총 103개이고, 순수 시비사업은 99개로 나타났음.
  - 이는 전년과 비교해볼 때, 국비보조 사업수는 5개, 순수시비 사업 18개가 줄어, 전체 사업 수로는 23개가 줄어든 것임.

#### 바. 100억원 이상 주요 사업

- 2018년 시민건강국 소관 사업 가운데 100억 이상 규모를 가진 사업은 총 7개임.
  - 가장 큰 예산규모를 가진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 '필수예방 접종 무료지원사업-국가예방접종 실시'로, 시민건강국 총 예산의 22.5%에 해당함. 다음으로는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이 5.4%,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운영' 사업이 5.0%,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사업이 4.5%, '산모신생아건강 관리 지원' 사업이 4.4%,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사업이 4.3%,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사업이 3.3%를 차지하고 있음.

- 상기 7가지의 사업은 시민건강국 총 예산 대비 49.3%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비 매칭 법정사업과 규모가 큰 시립병원 운영보조 예산이며,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은 새 정부의 공약인 국가치매책임제 추진을 위해 자치구별 치매 안심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예산액이 크게 증액된 것임.

#### 〈100억 이상 주요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번	부서	사업명	2016년 예산	2018년 예산	증액	국 예산 대 비율
1	생활보건과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국가예방 접종 실시	88,476	97,603	9,127	22.5
2	건강증진과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9,543	23,526	13,983	5.4
3	건강증진과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운영	16,324	21,509	5,185	5.0
4	보건의료정책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18,802	19,431	629	4.5
5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7,350	19,239	11,889	4.4
6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17,313	18,724	1,411	4.3
7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14,413	14,355	△58	3.3 (누계 49.3)

### 사. 신규사업 (주민참여예산 제외)

#### 1) 2018년 신규사업 현황

○ 주민참여예산을 제외한 2018년 신규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총 예산규모는 20억 4천 8백만 원임

- 이는 `17년의 15개 사업 110억원과 비교하면 1/5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년에 비해 `18년 예산이 기존 사업 중심의 보수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부서별로는 먹거리 마스터플랜 추진 부서인 식품정책과 사업이 3건, 8억 5천4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보건의료정책과 6건, 7억 5천만원, 건강증진과 1건, 1억 5백만원, 어린이병원 1건, 3억 3천 9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신규사업별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신규사업 내역〉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안	사업내용
	힘	합계 2,048,087		
1	보건의료 정책과	시립병원 실태평가보고서 용역	120,000	<ul><li>○ 대상(위치): 13개 시립병원</li><li>○ 내용: 시립병원 실태평가보고서 용역</li></ul>
2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운영	134,000	○ 대상(위치) : 공공의료기관 ○ 내용 : 응급실 방문 취약계층 고위험군에 대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의료지원 사업
3	보건의료 정책과	소아청소년기 당뇨병 예방 및 관리	50,000	○ 대상(위치) : 관내 학교 ○ 내용 : 소아당뇨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지지 분위 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4	보건의료 정책과	어르신 만성질환 안심돌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운영	160,000	○ 대상(위치) : 2개 자치구 시범운영 ○ 내용 : 안심돌봄팀 구성, 방문건강관리의사 확충, 사례 관리 전담요원 배치, 민간의료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안	사업내용
				든
5	보건의료 정책과	시 공공건물 태양광 보급	106,400	○ 대상(위치) : 성동구 보건소 ○ 내용 : 성동구보건소 옥상을 이용하여 일반거치 설치
6	보건의료 정책과	트라우마 아카데미 운영	180,000	○ 대상(위치) : 트라우마 치유가 필요한 시민 ○ 내용 : 보건인력을 활용한 단계별 트라우마 전문가 양 성 및 교육지원 등
7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통합건 강증진사업(모바 일헬스케어)	104,620	○ 대상(위치): 7개 자치구 시범운영 ○ 내용: 자치구 사전,사후 방문상담 및 검진서비스, 모 바일 앱 기반 맞춤형 건강생활지원 서비스
8	식품 정책과	맛체험터 및 음식공동체 운영	355,046	○ 대상(위치) : 사회적 취약계층 및 모든 서울시민 ○ 내용 : 맛체험터(서울혁신파크 맛동)의 식문화혁신프로 젝트 서울푸드랩 운영 등
9	식품 정책과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양관리서비스 제공	383,593	<ul><li>○ 근거: 먹거리마스터플랜(17.6.20)</li><li>○ 대상(위치): 취약계층 어르신 등</li><li>○ 내용: 실태조사, 임상영양사 배치를 통한 어르신 맞춤 영양관리</li></ul>
10	식품 정책과	서울 먹거리포털 구축 및 운영	115,496	<ul> <li>○ 근거: 먹거리마스터플랜('17.6.20)</li> <li>○ 대상(위치): 용역발주</li> <li>○ 내용: 미래 먹거리 정보화에 대한 비전 목표 및 단계</li> <li>적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등</li> </ul>
11	어린이 병원	어린이병원 의료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338,932	○ 근거: 전자정부법 제45조 ○ 내용: 병원 내 의료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대시 민 의료서비스 향상

\*상기 신규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외한 것임

# 아. 주민참여예산

### 1) 주민참여예산 현황

○ 2018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총 766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총 592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시민건강국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6개 사업에서 총 15억 1천 4백만원 이 편성됨.

#### (18 시민참여예산 유형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Ī	구분	계 (%)	시정참여형 (재정관리당관)	지역참여형 (새정관리담당관)	시정협치형 (민연협력담당만)	구단위 계획형 (지역공동처음등만)	동단위 계획형 (지역공동체담동만)
삵	전체	766	153	152	16	104	341
사업수	시민건강국	6 (0.8%)	1 (0.7%)	3 (2.0%)	2 (12.5%)	-	-
예	전체	59,250	35,138	8,950	5,652	7,050	2,460
예 산	시민 건강국	1,514 (2.6%)	1,000 (2.8%)	214 (2.4%)	300 (5.3%)	-	-

- `18년 주민참여예산의 가장 변화는 "시민참여예산제" 명칭을 변경하고 `17년에 100억원을 편성했던 협치서울 의제사업이 시민참여예산제로 흡수하는 등으로 확대·개편하였다는 점으로,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시정협치형,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시민건강국의 시민참여예산은 각각 시정참여형이 1건 10억원, 지역참여형이 3건 2억 1천 4백만원, 시정협치형이 2건 3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

(단위: 천원)

연 번	부서	사업명	예산안	사업개요	소관부서 의견
		총계	1,514,000		
1	건강 증진과	치매어르신의 인지건강 증진을 위한 주민 주도프로그램 운영(시민참여)	10,000	○ 치매고위험 및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공릉1단지 아파트 내 감각키움 공간(감각화단, 기억놀이터, 감각숲길 등)을 활용하여 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료 등 ○ 대상 : 노원구	적격
2	식품	마을부엌에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기(시민참여)	100,000	○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부엌 운영을 통해 지역 커뮤 니티 활성화 및 먹거리 취약 계층 지원 ○ 대상: 민간사업자 공모	적격
3	정책과	다문화 이주여성 먹거리 시민 프로젝트(시민참여)	200,000	○ 결혼이주 다문화 여성을 대상 으로 음식문화 및 조리교육을 통해 먹거리 시민으로 양성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먹거 리 지표 개발 ○ 대상: 민간사업자 공모	적격
4		여성이 안전한 공중화장실설치(시민참 여)	1,000,000	○ 25개 자치구 공중화장실에 안 심벨 및 여성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지원 ○ 대상: 25개 자치구	적격
5	생활 보건과	안양천 물놀이장 및 캠핑장 화장실 설치(시민참여)	150,000	○ 안양천 물놀이장 및 캠핑장 인 근에 공중화장실 설치(1개동) ○ 대상: 구로구	적격
6		윙윙; 우리마을 모기 방역단 운영	54,000	<ul><li>○ 18개 방역단 구성하여 선제적 방역 수행</li><li>○ 대상 : 서초구</li></ul>	적격

#### 2) 최근 5년간 주민참여예산 운영 및 편성 추이

- 주민참여예산은 2013회계연도를 시작으로 예산에 반영되기 시작하여 서울시 전체로는 매년 500억원 규모로 5년간 시행하여, 금번 2018년 예산은 6년차를 맞이하고 있음. 시행첫해의 총 사업 수는 3개였고, 2015년에는 13개로 크게늘었으며, 2017년에는 최대인 16개 사업(21억 3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다가, 금번 2018년 예산안에는 6개로 전년에 비해 10개 사업(△6억 2천 3백만원)이 줄어들었음.
  - 반면에, 예산 규모에 있어서는 '13년 3억 4천 5백만원으로 시작하여, '14년부터 '16년까지는 1억 4천만원, 8억 2천 9백만원, 4억 9,700만원 각각 등락을 거듭하다가 '17년에 21억 3천 7백만원으로 최대치를 갱신하였으며, 이번 2018년 예산안에는 15억 1천 4백만원으로 29.2%(6억 2천 3백만원)가 감소하였음. 이는 시민건강국과 관련한 다양한 예산 규모의 사업들이 시민에 의해 제안되어 시행된다는 것을 의미함.
  - 부서별 현황으로 볼 때는, 건강증진과 소관의 주민참여예산 이 2015년까지는 50% 갸량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2016년의 경우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사업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도 예산안에는 생활보건과에 79.5%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었음. 또한 식품정책과 소관의 먹거리 관련 예산이 2개 사업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시민들의 먹거리와 새로운 먹거리문화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부서별 참여예산 사업 및 예산 규모〉

(단위: 건, 백만원)

н	20	014	20	)15	20	016	20	017	20	018
부서별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총 계	4	140	13	829	12	497	16	2,137	6	1,514
보건의료정 책과	1	50	1	70	4	132	2	1,444	0	0
건강증진과	2	40	6	284	4	245	4	201	1	10
식품정책과	-	-	-	-	1	45	3	55	2	300
생활보건과	1	50	6	475	3	75	3	230	3	1,204
동물보호과	-	-	-	-	-	-	4	207	0	0

# ○ 최근 몇 년간의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 〈 최근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 신청 내역〉

(단위: 건, 천원)

자치구	2015년	2016년	2017	2018 예산안		
종로구		1(생활)		2(건강)	820,000	
중구			2(보건), 1(생활)	1(보건), 3(건강), 1(생활)	800,000	
용산구				1(동물)	100,000	
성동구			1(보건)	3(보건), 5(건강), 1(생활), 1(동물)	1,345,140	
광진구	1(생활)	1(식품)		2(보건), 1(건증) 2(식품), 1(생활), 2(동물)	303,560	

자치구	2015년	2016년	2017	2018 예산안	
동대문구		1(생활)	2(보건), 1(생활)	4(보건), 6(건강), 1(생활), 1(동물)	431,701
중랑구			1(보건), 1(동물)	1(보건), 1(건강), 1(식품), 2(생활)	838,400
성북구	1(생활)		2(보건), 1(건강)	3(보건), 5(건강), 1(식품), 1(동물)	2,000,000
강북구	1(보건)			4(보건), 1(건강), 1(동물)	560,000
도봉구	1(생활)		2(보건)	3(보건), 1(건강), 1(생활)	932,200
노원구	1(건강)	1(보건), 1(건강)	2(보건), 1(건강)	4(보건), 4(건강), 2(식품), 1(생활)	1,817,125
은평구				2(건강), 1(식품)	112,600
서대문구			2(보건), 1(생활)	2(보건), 2(건강), 3(생활)	1,736,400
마포구			1(보건)	3(보건), 2(건강), 1(식품), 1(생활), 1(동물)	1,415,000
양천구			1(보건), 1(식품)	2(생활), 1(동물)	450,000
강서구		1(보건)		1(건강)	100,000
구로구			1(보건)	2(건강), 1(식품), 3(생활)	2,362,858
금천구		1(보건)	1(보건)	4(보건), 1(건강), 1(식품), 1(동물)	476,500
영등포구			1(식품)	1(보건), 1(건강), 1(식품), 1(생활)	1,407,260
동작구	1(건강), 1(생활)	1(건강)		2(보건,), 2(생활)	353,500
관악구	1(생활)	1(생활)	2(보건)	2(건증), 1(식품), 1(생활)	395,760
서초구			1(보건), 1(건강), 1(동물)	4(보건), 3(건강), 2(생활), 1(동물)	386,000
강남구			2(동물)		-
송파구		1(보건)		1(보건),1(건강),1(식품),2( 동물)	250,000
강동구	1(건강), 1(생활)	1(건강)		1(보건),1(건강),1(식품),2( 동물)	1,100,000
서울시 전체	3(건강)	1(건강)	4(보건), 1(건강), 1(식품)	8(보건), 11(건강), 3(식품), 6(생할), 5(동물)	12,301,625

#### 3) 2018년 주민참여예산의 전반적 특징 및 검토의견

-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로 ① 공중화장실 및 공중화장실 내 안심벨, 여성위생용품 수거 함 설치 ② 지역 주민이나 다문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음 식문화 조성 및 조리교육, 먹거리 지원 사업 ③ 그 외 모기 방역 및 치매어르신 지원 프로그램 지원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음.
- 금번 `18년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 시행 6년차를 맞고 있는데,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과 지적을 한 바 있음.
  - 동일사업의 중복성 문제나 매년 반복되는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처럼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로 예산신청을 해야 하는 사 안들이 주민참여의 형식으로 이용되는 문제 등은 매년 반복 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금번 예산에도 동일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18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각 사업별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총 6건 모 두 '적정'이었으나, 치매 프로그램이나 음식문화 및 조리교 육 등의 사업은 현재 시행중이거나 `18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주민참여예산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임.

# 〈 주민참여예산 소관부서 검토 내역 〉

(단위: 백만원)

연 번	부서	세부 사업명	소관 부서 검토 의견		사업비
1	건강 증진과	치매어르신의 인지건강 증진을 위한 주민 주도프로그램 운영(시민참여)	<ul> <li>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유병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li> <li>○ 공릉1동은 노원구 19개 동 중에서도 노인인구가 많은 동에 속함</li> <li>○ 2016년 인지건강디자인 사업을 통해 공릉1단지 아파트 내 교차로, 쉼터벤치, 감각숲길 등이 조성되어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여 치매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 가능함</li> <li>○ 사업효과</li> <li>- 인지건강프로그램의 이용을 통해 치매어르신의 인지 건강 향상 및 기억력 증진을 도모</li> <li>- 지역내에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치매관리사업의 물리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li> <li>○ 수혜범위</li> <li>- 공릉1동 지역 치매 어르신 및 고위험어르신</li> </ul>	전 정	10
2	식품 정책과	마을부엌에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기(시민참여)	○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가정에서 의 식사준비에 대한 부담감 늘고 있는 사회적추세에 따라 향후 식생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식생활개선 문제가 사회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식사를 거르거나 편향된 식사를 자주 하는 식생활 취약계층을을 돌아보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음식공동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음식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음식공동체의 거점기반이 될 수 있는 마을부엌에 대한 현황조사와 인적 자원의 네트워크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한 본 사업이 이에 부합하는 사업이라 판단됨. ○ 또한 지역공동체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등 관련 부서와 협업으로 진행되어야사업의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사려됨.	저 정	100
3	식품 정책과	다문화 이주여성 먹거리 시민 프로젝트(시민참여)	○ 서울먹거리 전략에 포함되어 우리부서 에서 자치구와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기 로 한 다문화 음식공동체 사업이 있으 므로 수용은 하나, ○ 현재 제안한 기관만이 참여하는 형태가 아닌 다문화 가정의 식생활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리부서와 논의하고 협력해 왔던 많은 경험많은 기관들이 참여하는	적 정	200

연 번	부서	세부 사업명	소관 부서 검토 의견	사업비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함께 추진하는 방 향으로 진행하겠음.	
4	생활 보건과	여성이 안전한 공중화장실설치 (시민참여)	<ul> <li>&lt;공중회장실 안심벨 설치 관련&gt;</li> <li>○ 공중회장실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관인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와 이외 공중화장실 관리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으나,</li> <li>○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관리기관의관심이 저조하거나 예산확보의 어려움등으로 비상벨 설치가 부진할 수 있기에 관리기관의 수요조사를 통해 설치비를 지원하고자함.</li> </ul>	1,000
			<ul> <li>※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현황(2017.4월 말 기준)</li> <li>- 공원의 공중화장실 : 745개소 비상벨 전량 설치(한강 포함)</li> <li>- 이외 가로변 등 공중화장실 : 403개소 중 218개소 비상벨 설치(취약지역 위주)</li> </ul>	
5	생활 보건과	안양천 물놀이장 및 캠핑장 화장실 설치(시민참여)	○ 안양천은 국가하천으로써, 구로구 주민뿐 아니라 여러 인접도시 많은 주민들이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구간별 하천이용편의시설의 추가 확보를 통한 이용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특히 구로구에서 운영중인 안양천 물놀이장과 캠핑존의 경우 7월부터 8월까지무더운 여름철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도심속 피서지로써 많은 시민들이애용중에 있으나 인근에 위치한 화장실이 없어 매년 이용편의를 위해 신규설치를 요청하는 의견이 빈번하였음. ○ 따라서, 물놀이장 인근 안양천 제방 소	150
			단에 화장실을 신규 설치할 경우 하천 이용불편을 크게 해소하여 주민여기생 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6	생활 보건과	윙윙; 우리마을 모기 방역단 운영	○ 기후 온난화 등으로 방역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청소행정과 협업 정화조 모기방제 사업으로 관련업무가급증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는 방제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적 동별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별 방역사각 정지역과 모기유충서식지에 대한 선제적이고 주기적인 방역소독 실시로 신속하고 정확한 모기퇴치가 가능하고 모기로인한 주민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54

#### 자. 세부 사업별 검토 의견

# 1) 안전망병원 운영 : 사업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법률적 타당성 검토 필요

- 안전망병원은 민간의료기관 중 저소득, 행려, 노숙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도티병원, 성가복지병원, 다일천사병원, 요셉의원,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푸르메재활의원의 6개소에서 무료진료 대상자가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한 질병이나 입원, 검사, 수술 등의 전문 의료적 처치가 요구될 경우시립병원으로 연계하여 진료나 수술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임.
- 도티병원이나 그 외 무료병원 등에서 이들 환자에 대한 진료를 자선적 의도를 가지고 했으나 급성기 질환이나 응급수술을 요구할 경우 해당 병원들은 부족한 의료장비나 진료과등을 이유로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립병원에 의뢰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안전망병원 사업은 무료병원에 갈 수 밖에 없는 환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건강에 대한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인 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을 규정하는 헌법 제10조는 가 장 관계가 깊으며 헌법 제35조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를 규정함. 또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인용되는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주장하 고 있으며, 헌법 제36조 제3항은 국가의 보건의무를 규정 하고 있음.
- 안전망 병원에 의뢰되는 환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제도적인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로 주민등록말소로 인한 환자, 건강보험적용 예외대상(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병원도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환자들이 무료병원에 진료를 의뢰하면 무료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무료병원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시립병원에 의뢰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사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 불용액 증가 및 조례 위반이 우려됨.
- 안전망병원의 사업대상인 도티병원이 폐업하였으며, 외국인 노동자의원의 경우 장기휴업상태임.
- 추후 의뢰되는 환자 수가 작아질 것으로 예측하며 이는 이 미 2017년 사업수행실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2016년 예산은 4억2천만원이었으며 2017년 예산은 6억 3천 5백만원으로 2억 1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음. 2018년

예산의 경우 4억2천4백만원으로 2억1천1백만원 감소됨 (33%).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1억5 천만원 감소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이 1억 2백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안전망 병원 3년간 사업예산〉

(단위: 천원)

구 분	2016예산	2017예산(A)	2018예산(안) (B)	증감(B-A)	증감율
계	420,000	635,000	424,000	△211,000	△33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75,000	175,000	216,000	41,000	23
민간위탁금	245,000	310,000	208,000	△102,000	△32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000	0	△150,000	△100

-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을 통해 증감을 살펴보면 목표진료인원 의 감소가 보임. 2017년의 경우 서울의료원 135명, 보라 매명원 200명, 동부병원 100명으로 총 435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18년의 경우는 서울의료원 90명, 보라매병원 110명, 동부병원 80명, 서남병원과 장애인치과병원 합계 50명으로 총 330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도티병원의 폐업과 외국인노동자의원의 장기 휴업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감액 편성되었음.

#### 〈안전망 병원 목표실적 감소〉

(단위: 명)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2017년	135	200	100	-
2018년	90	110	80	50
증감	△45	△90	△20	신규

- 2017년의 경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5개구 3천만원을 각각 책정한 바 있으나 2018년 예산에는 해당목은 전액 삭 감되었음. 다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천3백만원 3개소 를 책정하고 있음.
- 2017년 예산의 경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보건소를 통해 안전망병원(무료)병원에 간호사 5명을 지원하려던 것임. 그러나 2018년 사업계획에 의하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통해 서울의료원에 지급하고 서울의료원에서 이를 토대로 간호사를 안전망병원(무료)병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도티병원 폐업과 외국인노동자의원의 장기휴업으로 인하여 간호사지원은 3개소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감액편성되었음.

### 〈안전망병원 운영 예산 세부 구성〉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민간경상 사업보조	서울의료원 진료비*명 1,300,000*135	= 175,000천원	서울의료원 진료비*명 1,300,000*90 민간의료기관 운영 지원* 개소	= 117,000천원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33,000,000*3 = 99,000천원		
	증감	사유		
	<u>도티병원 폐업, 외국인노동자의원 휴업으로 인한</u>	<u> 환자 감소</u>		
	보라매병원 진료비*명 1,300,000*200	보라매병원 진료비*명 1,300,000*110		
	= 260,000천원 동부병원 진료비*명 500,000*100	= 143,000천원 동부병원 진료비*명 500,000*80		
민간 위탁금	= 50,000천원	= 40,000천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진료비*명		
		500,000*50		
	증감사유			
	도티병원 폐업, 외국인노동자의원 휴업으로 인한 환자 감소, 신규 안전망병원 지원(서남,장애인치과)			
자치단체경	민간의료기관 운영 지원 30,000,000*5개구			
상	= 150,000천원			
보조금	증감사유			
	민간의료기관 운영 지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		

- 실제 사업수행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784건 집행액 5억 4천4백만원으로 나타났음. 2016년의 경우 사업실적은 340건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 감소하였으나 집행액은 4억2 천1백만원으로 사업실적 대비 집행액은 높아짐. 2017년 사업 수행내역을 살펴보면 9월 현재 164건으로 나타나며 집행액은 1억8천1백만원 으로 나타남.
- 2017년 예산을 통해 살펴보면 2017년에 안전망병원을 통해 4억8천5백만원의 치료비가 지원되어야 하나 9월 현재 1억8천1백만원이 집행되어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집행부는 도티병원의 폐업과 외국인노동자의원의 장기 휴업 으로 인한 사업실적 감소를 원인으로 밝히고 있음.

### 〈안전망 병원 사업실적 2015년〉

연번	의료기관명칭	연계시립병원	환자수	진료연계 실적	금 액(원)
1	다일천사병원	총인원	20	진료20	7,056,830
2	도티병원	총인원	154	진료57,검사97	171,216,752
3	성가복지병원	총인원	243	진료195,검사48	107,360,911
4	요셉의원	총인원	285	진료256,검사29	184,302,350
5 외국인노동자 총인원 전용의원 총인원		82	진료82	74,834,316	
총 계			784	진료610,검사174	544,771,159

# 〈안전망 병원 사업실적 2016년〉

연번	의료기관명칭	연계시립병원	환자수	진료연계 실적	금 액
1	다일천사병원	총인원	17	진료17	21,284,030
2	도티병원	총인원	43	진료43	165,962,550
3	성가복지병원	총인원	134	진료86,검사48	88,105,170
4	4 요셉의원 총인원		110	진료110	80,164,490
5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	총인원	36	진료36	65,843,010
	총 계			진료292,검사48	421,359,250

# 〈안전망 병원 사업실적 2017년〉

연번	의료기관명칭	연계시립병원	환자수	진료연계 실적	금 액
1	다일천사병원	총인원	2	진료2	372,760
2	도티병원	총인원	13	진료13	29,278,870
3	성가복지병원	총인원	41	진료16,검사25	19,335,500
4	4 요셉의원 총인원		108	진료88,검사20	132,230,100
5	5 외국인노동자 - 전용의원 -		-	-	-
	총 계			진료119,검사45	181,217,230

- 안전망병원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 시립병원의 공공성 확보 등 동 사업의 진행은 타당한 면이 분명히 존재하나 타 사업 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먼저 시립병원은 조례¹)에 의한 감면과 시립병원 자체적인 감면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시립병원의 감면제도들을 살 펴보면 시립병원의 경우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조례에 정해진 금액만큼 의료비의 감면 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병원 각각의 규정에 의한 진 료비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서울의료원의 감면 제도들은 서울의료원 예산(안)의 경상사업보조에 해당하는 것들로, 안전망 병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따로 안전망 병원 사업으로 분리되어야 하는지 의문이었다 할 것임. 이는 서울의료원에 공공의료 수행을 목적으로지급되는 보조금들과 중복편성에의 우려가 있다 할 것임.

<sup>1)</sup> 제8조(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산정된 진료수가등에서 본인부담 금을 면제한다.

<sup>1.</sup> 마약류중독자(「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독자를 말한다)

<sup>2.</sup> 병원의 전염병동, 정신병동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건강진단을 요하거나 감염 또는 상해를 입은 사람

<sup>3.</sup>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그 행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시에서 직영으로 시행하는 각종 공사장 등의 작업현장에서 그 공사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자

<sup>4.</sup> 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수용자측의 부상자

② 시장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준병실에 입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서울시립병원 자체 규정에 의한 진료비 감면제도〉

병원명	감면대상	감면 진료비 항목	감면범위(감면율)	
	의료수급권자(1,2종) (시설입소자,행려환자)	급여,비급여진료비	100%	
서북 병원	차상위계층,의료수급권자(1.2종)	급여,비급여진료비	30%	
55 전	서울시 안전망 병원 의뢰 환자	전산화 단층 촬영료	100%	
	시설시 한천당 당한 크로 환자	결핵 환자 진료비 전체	100%	
	전염병동,정신병동근무직원중 건강진단을요하거나감염,상해를입 은자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100%	
	시주관각종행사,공사중발생한환자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100%	
은평	노숙자, 행려, 시설수급자	비급여진료비	100%	
병원	의료급여, 장애인	비급여진료비(치과,MRI)	30%	
	서울시 안전망 병원 의뢰 환자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100%	
	시설시 한단당 당한 크되 한지	MRI 검사	100%	
	어린이낮병동,발달치료센터 의료급여수급자(1,2종)	비급여(행동치료)	100%	
	의료급여,차상위환자	선택진료비	100%	
	서울시사회복지시설(은평의마을,여 성보호센터)입소자	비급여 진료비	100%	
	의료급여입원환자일부(의사의감면 요청서수령)	비급여MRI,CT,초음파검사비 100%		
	북한이탈주민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외래50%입원80%	
	북한이탈주민(치과 진료지원)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틀니:1인최대2백만원 보철:서울시지원금외20%	
	행려환자(구청승인)	비급여 진료비	100%	
	65세이상서울시거주의료급여환자 로이동치과진료대상자	이동치과 진료비	100%	
서울 의료원	학대피해노인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본원)	건강안전망 병원 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여성폭력피해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위기청소년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희년의료공제회외국인,이주민	선택진료비	100%	
	건강검진 후 외래환자	진찰료1회	100%	
	직원본인,직계가족	진료비 본인부담금	50%	
	수탁병원직원본인,배우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50%	
	수탁병원 직원 직계가족	진료비 본인부담금	25%	
	직원 중 업무상 재해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의료원 귀책사유 대상자	의료분쟁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의료분쟁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서울 의료원	의료급여,차상위환자	선택진료비	100%	

병원명	감면대상	감면 진료비 항목	감면범위(감면율)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은평의마을,여성보호센터)입소자	비급여 진료비	100%
	의료급여입원환자일부 (의사의감면요청서수령)	비급여MRI,CT,초음파검사비	100%
	북한이탈주민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외래50%입원80%
	행려환자(구청승인)	비급여 진료비	100%
	65세이상서울시거주의료급여환자 로 이동치과진료대상자	이동치과 진료비	100%
	학대피해노인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분원)	건강안전망 병원 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여성폭력피해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위기청소년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희년의료공제회외국인,이주민	선택진료비	100%
	건강검진 후 외래환자	진찰료1회	100%
	직원본인,직계가족	진료비 본인부담금	50%
	수탁병원직원본인,배우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50%
	수탁병원 직원 직계가족	진료비 본인부담금	25%
	직원 중 업무상 재해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의료원 귀책사유 대상자	의료분쟁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의료분쟁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동부 병원	극빈자 (기초생활수급권자,장애인,차상위등)	본인부담금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30까지 ○기타극빈자 -병원장방침에 의함
	의료급여환자	선택진료비	100%
보라매	의료급여환자	상급병실료	1인실 30%, 2인실 30%, 4인실 70%
병원	차상위계층	선택진료비	100%
	행려환자	비급여	100%
	노숙인	선택진료비	100%

○ 301네트워크과의 관계도 중요함. 안전망병원에 의뢰된 환자가 301네트워크와 다른 점은 먼저 안전망병원은 무료병원에서 진료할 수 없는 환자를 장비와 시설이 갖추어진 시립병원에 연계하는 것과 이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임. 301네트워크는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가 아닌환자를 발굴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할 것임.

- 그러나 안전망병원에 의뢰된 환자들이 질병의 치료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안전망병원 사업이 더욱 타당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즉, 안전망병원에 의 뢰된 환자들이 퇴원 또는 치료의 완료 시기에 적절한 사회 적 자원에 연계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
- 병원의 사회사업실 기능강화 측면이 안전망병원 사업에서 동시에 고려되었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짐. 그러나 동 사업은 그러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음.
- 안전망병원에 의뢰되는 환자의 질적인 측면에서 고려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무료병원의 부실한 장비나 시설로 인한 치료의 어려움을 이유로 종합병원에 의뢰되는 형태이나 무료진료기관의 이용자들이 가진 문제는 의료적인 욕구만이아니라 다각도의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안전망병원 사업이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시민에게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 것은 의미있다 할 것이나 반대로 근원적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이르지 못하는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음.
- 노숙인 등과 알코올중독 환자 등 장기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도 존재함. 알코올중독의 경우 은평병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안전망병원안에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대 응능력이 약한 것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음.
- 안전망병원 사업을 단순 의료비 지원에서만 생각할 필요는

- 없으며 경상예산으로 인력보조를 해 준다면 시립병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의 타 의료기관의 사회사업실들과 연계가능한 인력을 구성하여 치료비 지원액을 줄이고 인적자원을 활용한 자원가 연계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초기에는 동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끌어 갈만한 동력을 찾아내지 못하였다면 사업이 3년간 진행되어 온 상황에서 사업을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 그리고 안전망병원에 의뢰되는 환자들 중 일부는 의학적 치료 외에도 장기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알코올중독, 노숙질 환자 요양을 위한 쉼터 등이 필요하기 때문임.
- 이러한 이유로 인력에 대한 지원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치료비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고의 여 지가 있다고 하겠음. 이미 시립병원에 지원되고 있는 공공의 료손실보전에 대한 금액으로 해당 환자들에 대한 공공의료 손실을 일부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립병원의 설립 목표가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안전망병 원을 통한 치료비 지원은 예산을 중복 사용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진료비 감면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사업 실의 사업을 통하여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시립병원 사회사업실의 기능을 활성화 하고, 시립병원에 외부 펀드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러한 면에서 안전망병원 사업을 301네트워크 또는 시립 병원의 사회사업실과 연계하는 방안을 구축하여 예산절감 및 효과성 증대를 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무료의원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안전망병원 사업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집행부 는 푸르메병원, 녹색병원과 신규 협약을 맺고 사업을 수행중 에 있음.
- 그러나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의3에서 ""안전망병원"이라 함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의 무료진료를 하는 민간의료기관(이하 '민간의료기관(무료)'이라 한다) 등과 이와 연계되는 공공의료기관을 말한다."고 하여 안전망병원은 민간의료기관 중 무료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망병원사업에 푸르메병원이나 녹색병원이 참여하는 것은 조례위반사항임.
  - 이에 따라 예산 편성에 앞서 조례가 개정되었어야 할 필요 성이 존재함. 다만 이 경우 "안전망병원(무료)"에 예산이 직접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점으로 인하여 다툼의 여지는 있 다고 할 것임.
- 그러나 무료진료기관이 아닌 타 병원에서 의뢰되는 경우 안 전망병원의 예산이 아닌 시립병원의 사회사업실의 외부자금 유치나 자체예산을 통해 감면 등 치료비 지원을 해야 적법한 것으로 여겨짐.

#### 2) 어린이병원: 부적절한 예산 편성

○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의 경우 전년대비 1억6천6 백만원 증가한 15억3천4백만원으로 예산편성되어 제출됨. 항목별로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경우 1억1천만원 증액되며, 사무관리비 2천4백만원, 공공운영비 3천1백만원 증액 되었음.

####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예산〉

구 분	201	7년	00100   41(01) (D)	~ (D. A)	
구 분	본예산	최종예산 (A)	2018예산(안) (B)	증감 (B-A)	(B-A)*100/A
ЭІ	(x-)	(x-)	(x-)	(x-)	(x-)
	1,366,631	1,366,631	1,533,199	166,568	12
기간제근로자등보	(x-)	(x-)	(x-)	(x-)	(x-)
수	223,110	223,110	333,576	110,466	49
사무관리비	(x-)	(x-)	(x-)	(x-)	(x-)
	479,881	479,881	504,268	24,387	5
공공운영비	(x-)	(x-)	(x-)	(x-)	(x-)
	661,640	661,640	693,355	31,715	4
재료비	(x-)	(x-)	(x-)	(x-)	(x-)
	2,000	2,000	2,000	0	0

- 예산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관련하여 1억1천만원 증액 되었는데 이는 어린이병원 발달센터의 건립으로 인하여 청소 등 용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임.
- 그러나 해당 예산 편성에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를 촉탁직과 기간제로 분리하여 예산편성 한 것으로 촉탁직과 기간제근로자간 임금차이가 발생하는 등

- 예산편성에 있어 문제점 존재한다 할 것임.
- 2017년 예산편성과는 다르게 촉탁직을 채용한다고 하였는데 촉탁직의 경우 호봉이 산정되어 있으며 4호봉 기준으로 1인당 연 3천6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반면 기간제 근로 자의 경우 호봉산정이 없으며 1인당 연 3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의 시정 철학과 맞지 않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하더라도 공공사업장에서 이러한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청소 등) = 223,110천원 -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청소 등) 5명*12개월*2,479,000원 = 148,740천원 - 발달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청소 등) 5명*6개월*2,479,000원 = 74,370천원		
<ul> <li>○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110,466천원 증액 (223,110천원 →333,576천원)</li> <li>- 촉탁직(청소3(4호봉), 청소1(1호봉), 경비1(1호봉)), : 180,969천원/ 기</li> <li>: 152,607천원</li> <li>- 발달센터 관련 청소근로자 근무기간이 2017년 6개월 편성에서 2018년 따라 증액(152,607천원)</li> </ul>			

○ '어린이병원 고객중심의료서비스 제공'은 전년대비 1억8천5 백만원 증가하여, 산출 근거 중 일부는 부적절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여겨짐. 38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된 증가의 원인으로는 사무관리비 7천1백만원, 특정업무경비 4천1백만원 등임.

〈어린이병원 고객중심의료서비스 제공 예산〉

구 분	201	7년	00100   \L(01) \(D)	증감 (B-A)	
<u> </u>	본예산	최종예산 (A)	2018예산(안) (B)	등업 (D-A)	(B-A)*100/A
Я	(x-)	(x-)	(x33,476)	(x33,476)	(x-)
	3,654,544	3,654,544	3,839,544	185,000	5
기간제근로자등보	(x-)	(x-)	(x-)	(x−)	(x−)
수	18,144	18,144	0	△18,144	△100
사무관리비	(x-)	(x-)	(x-)	(x-)	(x-)
	296,528	296,528	367,658	71,130	23
행사운영비	(x-)	(x-)	(x-)	(x-)	(x-)
	40,489	40,489	49,620	9,131	22
시책추진업무추진	(x-)	(x-)	(x-)	(x-)	(x-)
비	10,800	10,800	11,000	200	1
특정업무경비	(x-)	(x-)	(x-)	(x-)	(x-)
	333,000	333,000	374,400	41,400	12
사회복무요원	(x-)	(x-)	(x33,476)	(x33,476)	(x-)
보상금	10,584	10,584	40,532	29,948	282
행사실비보상금	(x-)	(x-)	(x-)	(x−)	(x−)
	27,000	27,000	26,000	△1,000	△3
기타보상금	(x-)	(x-)	(x-)	(x-)	(x-)
	2,000	2,000	2,000	0	0
의료및구료비	(x-)	(x-)	(x-)	(x-)	(x-)
	2,915,999	2,915,999	2,968,334	52,335	1

○ 사무관리비의 증액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진료수준제고를 위한 위탁교육이 전년 3천4백만원에서 2018년은 5천5백만원

- 으로 2천1백만원 증가하였음.
- 총 사무관리비의 증가액은 7천1백만원이고 이중 진료수준제 고를 위한 위탁교육 예산의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총 사무관리비 증가액의 29.5%임.
-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교육대상 인원수의 증감 등으로 인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의사의 해외학회 등록비가 1천2백만원 증가한 1천5 백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여기기 어려 욱.
- 보수교육 대상 의사수가 20명에서 2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학회등록비가 1천2백만원 증가할 수 있는 증가폭은 이해하 기 어려운 수준임.
- 어린이병원의 경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술지 논문이 지난 3년간 2건에 불과한 점, 그 중에 의사가 주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인 학술지가 없는 점 등 학회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이 없었음.
- 국내학회가 아닌 해외학회 등록비를 예산편성 한 것은 해외 학회에의 참가 근거가 될 수도 있으나 반대로 해외 학회 참 가를 위한 불필요한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음.
- 살펴보면 어린이병원에서 해외학회에 참여한 경우 포스터발 표에 그치는 바 포스터발표의 학술적 가치는 존중하더라도 어린이병원의 연구실적을 살펴 볼 때 포스터발표를 위하여 학회 등록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짐.

- 은평병원의 경우는 5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서북병원의 경우는 관련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에 비교하여 보더라도 어린이 병원이 3백만원에서 400% 증액한 1천5백만원의 학회 참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할 것임.
-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이에 상응할 수 있는 실적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어린이병원 고객중심의료서비스 제공-사무관리비〉

2017년	2018년	증감
지 진료수준제고 위탁교육 의 = 34,290천원	진료수준제고 직원교육 = 55,760천원	21,470천원
원무요원 위탁교육 133,333원*6명 = 800천원	원무요원 위탁교육 100,000원*11명 = 1,100천원	300천원
영양사 교육 100,000원*1명*2회 = 200천원	영양사 교육 100,000원*1명*2회 = 200천원	-
의사 보수교육 125,000원*20명 = 2,500천원	의사 보수교육 125,000원*22명 = 2,750천원	250천원
치료사 보수교육 100,000원*30명 = 3,000천원	치료사 보수교육 100,000원*26명 = 2,600천원	△ 400천원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100,000원*20명 = 2,000천원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100,000원*34명 = 3,400천원	1,400천원
재활특수치료교육 717,142원*7명 = 5,020천원	재활특수 치료교육 475,000원*22명 = 10,450천원	5,230천원
치위생사보수교육 120,000원*4명 = 480천원	치위생사 보수교육 120,000원*5명 = 600천원	120천원
외부강사 초청교육(진료부) 200,000원*20회 = 4,000천원 외부강사 초청교육(약제과) 300,000원*4회 = 1,200천원 외부강사 초빙교육(간호부) 300,000원*7회	외부강사 초청교육 7,300,000원*1년 = 7,300천원	-

= 2,100천원		
해외학회 등록비(의사) 500,000원*6회 = 3,000천원	의사 등 해외학회비 15,000,000원*1년 = 15,000천원	12,000천원
약사 보수교육 1,275,000원*2회 = 2,550천원	약사보수교육 1,275,000원*2회 = 2,550천원	-
간호사 환자 및 감염관리과정 등 300,000원*6명 = 1,800천원	환자 및 감염관리과정 300,000원*6명 = 1,800천원	-
간호사 보수교육 40,000원*132명 = 5,280천원	간호사 등 보수교육 50,000원*134명 = 6,700천원	1,420천원
간호부 교육 매뉴얼 제작 등 9,000원*40부 = 360천원	간호부 교육매뉴얼 등 지침제작 9,000원*40부 = 360천원	-
	간호대학 임상실습 교육 등 3,000원*250명 = 750천원	750천원
	산업안전교육 200,000원*1명 = 200천원	200천원

# 3) 서남병원 위탁운영 : 수탁기관 변경이후 예산 변동 미미함

- 서남병원은 2017년 90억8천만원에서 5천9백만원 증가한 91억4천만원으로 예산편성되었음. 민간위탁금은 88억9천만 원이며, 민간위탁사업비 2억5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산출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공의료손실보 전으로 82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8천6백만원 감액된 것임.

#### 〈서남병원 위탁운영 예산안〉

구 분	201	7년	2018WIYI(0I) (B)	571 (D A)	
구 분	본예산	최종예산 (A)	2018예산(안) (B)	증감 (B-A)	(B-A)*100/A
Э	(x-)	(x-)	(x-)	(x-)	(x-)
	9,087,763	9,087,763	9,147,322	59,559	0
민간위탁금	(x-)	(x-)	(x-)	(x−)	(x-)
	8,943,963	8,943,963	8,895,522	△48,441	0
민간위탁사업비	(x-)	(x-)	(x-)	(x-)	(x-)
	143,800	143,800	251,800	108,000	75

- 전년 대비하여 예산 산출근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공공의료손실보전금은 8천6백만원 감소하였으며, 학대피해 노인 지원사업은 전액 감액되었으며, 301네트워크 사업의 경우는 1천3백만원 감소하였음.
-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및 치료와 관련된 사업의 대부분이 감소하였고 공공의료손실보전금도 감소하였으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체예산은 증가하였음.
- 대부분 장비구매 등으로 인하여 증가한 금액이나 협의의 의 미여도 공공의료를 실천하기 위한 예산조치가 미흡한 것은 사실임.

## 〈서남병원 위탁운영 예산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	· 나(안)
	공공의료손실 보전 8,366,129,000 * 1건	= 8,366,129천원	공공의료손실 보전 8,280,000,000 * 1건	= 8,280,000천원
민간위탁금	무료간병 사업 운영 407,664,000 * 1건	= 407,664천원	무료간병 사업 운영 466,815,000 * 1건	= 466,815천원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인	<del>!</del> )
	백세건강센터 운영 75,867,000 * 1건	= 75,867천원	백세건강센터 운영 72,929,000 * 1건	= 72,929천원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사업 17,000,000 * 1건	= 17,000천원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사업 17,000,000 * 1건	= 17,000천원
	뇌혈관 튼튼 프로젝트사업 21,500,000 * 1건	= 21,500천원	뇌혈관 튼튼 프로젝트사업 21,500,000 * 1건	= 21,500천원
	학대피해노인 의료지원사업 5,000,000 * 1건	= 5,000천원		
	301네트워크 50,803,000 * 1건	= 50,803천원	301네트워크 37,278,000 * 1건	= 37,278천원
		증감	사유	
	- 공공의료손실 증액 - 301네트워크 감액			
	의료장비 구입 143,800,000 * 1건	= 143,800천원	의료장비 구입 100,000,000* 1건	= 100,000천원
			노후 정보 보안 장비 교체 135,300,000 * 1건	= 135,300천원
민간위탁사업비			웹 접근성 인증을 위한 고도 16,500,000 * 1건	E화 = 16,500천원
		증감	사유	
	- 노후 정보보안 장비 교체 - 웹 접근성 인증을 위한 고도호	i <del>l</del>		

- 서남병원의 재위탁 당시 현재 수탁자인 서울의료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부족한 의료취약계층 진료 건수, 북한이탈주민 노인학대피해자등 진료에 관한 공공의료사업실적을 높일 수 있다고 한 바 있음.
- 또한, 운영효율성의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대비 공공의료손 실보전금 금액이 높은 점, 재료비와 관리운영비 비율이 높은 점 등을 들어 서울의료원이 수탁하게 되는 경우 예산절감에 대한 효과성이 높다고 주장한 바 있음.

- 3년간 인건비 매년 10억원, 재료비 매년 12.3억원을 절감 하여 67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여 수탁자에 선정된 바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민간위탁금의 지급은 타당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여겨짐.
- 서남병원의 수탁자 변경과 관련하여 과열된 양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수탁자로 선정된 이유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공공의료손실보전금은 공공의료를 수행하며 생기는 손실에 대한 보전금으로 이 손실에는 재료비, 수가 등이 포함되게 되는데 연간 재료비 절감액을 12억3천만원 선으로 추정하여 수탁자 선정된 바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일부 감액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서남병원 위탁운영 2018년 예산안의 경우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음.

## 4)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 : 중액 내용 부적절

○ 환자권리 옴부즈만의 경우 전년 1억 3천만원에서 올해 1억 4천3백만원으로 1천3백만원 증가하였음.

#### 〈환자권리 옴부즈만 운영〉

구 분	201	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т =	본예산	최종예산 (A)	2010예산(원) (B)	88 (D-A)	(B-A)*100/A
Я	(x-)	(x-)	(x-)	(x-)	(x-)
	130,000	130,000	143,954	13,954	10
민간경상사업보조	(x-)	(x-)	(x-)	(x-)	(x-)
	130,000	130,000	143,954	13,954	10

- 예산의 증액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추어 이루어질 수 있음. 그러나 환자권리 옴부즈만 운영의 경우 증액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의 증가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짐.
- 예산의 증액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추어 이루어질 수 있음. 그러나 환자권리 옴부즈만 운영의 경우 증액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의 증가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짐.
- 외견상 볼 때 사업비가 2천7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 만 실제 프로그램 운영비는 감소하였음. 이는 사업비에 회의 참석수당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착시임.
- 실제 사업비 증감은 프로그램 운영비 2천7백만원에서 2천6 백만원으로 1백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년대비 1천 2백만원 홍보 및 캠페인 경비가 신설되어 증가함.
- 그러나 기존사업이 카드뉴스 제작, 포럼 운영 등 사업비로 홍보 및 캠페인을 진행해 온바 캠페인 경비의 책정이 타당한지는 의문이 있다고 할 것임.
- 2017년 기준으로 사업비는 5천만원이었으나 2018년 에는

7천8백만원으로 증가하였음. 이 2천8백만원의 증가가 실제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되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회의 참 석수당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여 프로그램 보다는 인건비성 경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환자권리 옴부즈만 사업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나 정도가 과하다고 할 수 있음.
- 2017년 예산은 전문가 자문 및 참석수당으로 총 2천3백만 원을 책정한 바 있음. 그러나 2018년 예산안에는 전문가 자문 및 참석수당으로 총 4천만원을 책정하였음. 이에 따라 1천7백만원이 자문 및 참석비로 증액됨.
- 반면, 사업을 수행하는 상담원, 기획조사, 교육, 활동보조원 및 모니터링 요원의 총 인건비는 2017년 기준 7천9백만원 에서 6천5백만원으로 총 1천4백만원 감소함.
- 실제 사업의 수행 인력은 2017년 상담원 2명, 기획조사·교육·활동보조원 2명과 연중 40일간 활동하는 모니터링 요원 6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8년은 2명이 증가하여 상담원 2명, 기획조사·교육·활동보조원 4명과 연중 40일간 활동하는 모니터링 요원 6명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됨.
- 인건비는 사업수행인력의 수에 비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인력이 증가했으나 전체 인건비가 줄어든 것은 이 해하기 어려운 일임.

- 이때 인건비 산출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담원의 경우 월 2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인건비를 산출하여 2명의 인력이 연간 4천8백만원을 사용할 것으로 산출되었음. 모니터링 요원의 경우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시급 7530원으로 전년일급 5만원 대비 일부 상승한 바 있음. 그러나 이 상승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으로 상승의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임. 그런데 기획조사·교육·활동보조원의 경우에 전년 1천9백만원에서 2018년 289만원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산출근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4인이 월 1일 근무하는 것으로 인건비라 하더라도 사업인력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부적절한 예산편성이나 그간 사업진행에 있어 인건비부풀리기가 의심된다 할 것임. 또한 2017년에 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의 경우 대폭 확대 된 반면, 조사나 교육 등의기능이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환자권리 옴부즈만 예산 산출내역〉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비 = 130,000천원	○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비 = 143,954천원
	- 사업비 = 50,800천원	- 사업비 = 78,604천원
민간경상사업보	▷ 옴부즈만 자문 및 참석수당 = 23,500천원	▷ 옴부즈만 정례회의 참석수당 17명*5회*150천원 = 12,750천원
조 	▷ 프로그램 운영 등 = 27,300천원	▶ 환자권리옴부즈만 소위원회 참석수당 17명*5회*150천원 = 12,750천원
	- 인건비 = 79,200천원	▷ 환자권리포럼 참석수당 17명*5회*150천원 = 12,750천원
	▷ 상담원	▷ 환자권리교실 패널 참석수당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2,000천원*2명*12월 = 48,000천원	6명*2회*150천원 = 1,800천원			
	▷ 기획조사,교육,활동보조원 800천원*2명*12월 = 19,200천원	▶ 프로그램 운영 등 26,554천원 = 26,554천원			
	▷ 모니터링요원 50천원*6명*40일 = 12,000천원	▷ 환자권리 증진 캠페인 및 홍보 4,000천원*3회 = 12,000천원			
		- 인건비 = 65,350천원			
		▷ 상담원 2,000천원*2명*12월 = 48,000천원			
		▷ 기획조사,교육,활동보조원 7,530원*8시간*4명*12월 = 2,892천원			
		▷ 모니터링 요원 7,530원*8시간*6명*40일 = 14,458천원			
	증감사유				
	○ 사업비 - 정례회, 소위원회, 포럼, 환자교실 패널 참석 수당 : 총 17회 - 환자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캠페인 전개 및 홍보 실시 - 의료민원 기획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한 환자권리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 ○ 인건비 - 조사요원 증원(2명) - 2018년도 시급(7,530원) 적용				

- 환자권리 옴부즈만 사업의 주요한 성과로는 환자권리에 대한 상담과 기획조사로 매년 기획조사보고서 등을 제공하고 있 음. 이에 따라 조사나 교육 등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타 기관에 대한 권고나 집행력이 없는 자문회의 등의 기능이 강 화되는 것은 사업목적에 걸맞는 예산편성이라 보기 어려움.
- 기획조사 등의 보고서의 질에 대한 평가 보다는 사업목적에 걸맞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만약 전문가 자문기구 위주로 사업성격이 변화하게 된다면 다산콜센터의 기능에 환자권리 옴부즈만 기능을 추가하여 다

산콜센터로 창구단일화를 이루는 것이 서울시 전체 예산 집 행에 있어 효율적이라 할 것이며 환자권리 옴부즈만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할 것임.

- 이러한 이유로 사업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하 겠음. 환자권리옴부즈만 사업이 환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민원의 청취 외에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환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의회와 서울시 모두 동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환자권리 옴부즈만의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원의 청취와 안내 외엔 기능 수행을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음.
- 실제로 환자권리 옴부즈만 사업의 경우 보고서를 통해 살펴 보면 환자고충청취가 85.5%로 나타나며 관계기관을 안내 하는 것은 14.5%에 그치고 있음. 또한 타 기관 연계사례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 연계하는 건이 전체의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문제의 해결이 큰 목적이라 할 것이나 환자권리 옴부즈만의 경우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감정 노동 형태로 환자의 권리와 관련한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 기 어려움. 또한 해당 상담사들은 의료민원에 대한 전문가가 아님.
- 이러한 형태의 상담은 일반민원상담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서울시 전체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해 본다면 동 사업은 다

산콜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사업성과를 볼 때 가장 타당하다고 할 것임.

#### 5) 트라우마 아카데미 : 사업 추진 계획 부재

- 2018년 신규사업인 트라우마 아카데미 사업은 총 1억 8천 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음.
- 예산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동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제66조2)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 제 73조의2³)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 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체계적 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

<sup>2)</sup>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생략>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sup>3)</sup> 제73조의2(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 제5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을 위한 상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sup>1.</sup> 재난 및 피해 유형별 상담 활동의 세부 지원방안

<sup>2.</sup>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sup>3.</sup> 심리회복 전문가 인력 확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sup>4. 「</sup>정신건강중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중진시설과 의 진료 연계

<sup>5.</sup> 상담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연구 및 홍보

<sup>6.</sup>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 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트라우마 아카데미 예산〉

구 분	201	7년	00100		
구 분	본예산	최종예산 (A)	2018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x-)	(x-)	(x-)	(x-)	(x-)
	0	0	180,000	180,000	0
민간경상사업보조	(x-)	(x-)	(x-)	(x-)	(x-)
	0	0	180,000	180,000	0

- 예산사업 설명서를 통해 살펴보면 서울시는 타 지방에 비해 보건인력과 보건자원4)이 풍부함에도 불구 관련 부처나 기관 에서 각자 재난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난 발생시 비효 율적 대처는 물론 자칫하면 대규모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에 재난대비 기존 보건인력과 보건자원을 활용하고 민관 재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재난시 대규고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 는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밝힘.
- 예산사업 설명서에 밝힌 구체적 사업계획은 자원연계를 통한 현황 조사 및 DB구축(민관트라우마센터 운영 현황조사 및 연계방안 모색,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울시 컨트롤 타워), 트라우마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보건인력을 활용한 단 계별 트라우마 전문가 양성 및 교육지원(재난 등의 사건초기 에 현장 투입,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구체적 사업계획 으로 밝히고 있음.

보건인력: 정신보건인력, 찾동/소방/학교 종사자 등

<sup>4)</sup> 보건자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트라우마센터, 서울시 심리지원센터 등

- 그러나 동 사업의 추진에는 불필요한 점이 있다고 할 것임. 먼저 조사 및 DB 구축과 관련한 것임. 이는 공공보건의료재 단을 통해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이에 해당 사업은 동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기 위한 사업목적으로 보기 어려움.
- 다음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울시 컨트롤 타워라고 이야 기 하고 있으나 재난상황에서 실제 심리지원이나 치료적 역할 은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적 역할이며 2차적 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인 바 심리적 지원이나 치료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 로서 역할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사업목적 설정이 부적합하다 고 할 것임.
- 트라우마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경우 시 집행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으며 이는 자문기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실질 적인 재난 대응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임.
- 보건인력을 활용한 단계별 트라우마 전문가 양성 및 교육지원 (재난 등의 사건초기에 현장 투입,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의 경우 전술한 전문가 협의체를 통하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전문가 집단사이의 협조를 통해 민간자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 일로 여겨짐. 또한 조사 및 DB 구축이동 사업의 목적 중 하나로 기존에 적합한 트레이닝을 받은 전문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임.

- 인력확보차원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실제 단기 간의 교육으로 원하는 수준의 전문가가 양성될지는 의구심 있다고 할 것임.
- 예산의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통계목은 민간경상사 업보조금으로 2인에 대한 인건비 1억3백만원과 사업비 7천6 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민간경상사업보 조금(307-02)의 경우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 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
- 민간에 수많은 트라우마 클리닉이나 센터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여겨짐.

### 〈트라우마 아카데미 예산 세부산출내역〉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민간경상		○ 인건비(2명)103,950,000 103,950,000 = 103,950천원 ○ 사업비 76,050,000 76,050,000 = 76,050천원
사업보조	증감사유 2018년 신규사업	

○ 그러나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자원을 활용한다면 일부 인건비의

경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인의 인원이 DB구축, 협의체구성, 전문가 양성 등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 할 것 임. 또한, 결국 전문인력의 양성은 정신과 전문의가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이는 시립병원의 자원을 활용하는 보조금 사업 으로 충분히 운영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이 외에도 전문인력 의 양성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음.

- 시민건강국은 이러한 분야에 대한 2개의 전문조직을 산하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재단'이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구용역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 또한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제출 이후에도 집행부 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집행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음.
- 법적인 근거가 있는 사업이라도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예산 이 편성되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할 것임.
- 사업의 성격과 관련하여서도 트라우마라 부르는 정신적 외 상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라는 정신병리현상으로 이어지게 될 가 능성이 높음.
- 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SM-IV,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에 의하면 외상성 사건에 개인이나 타인의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

음, 심각한 상해 또는 사건을 직접 경험하는 외에도 타인의 죽음, 상해, 신체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을 목격하여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극심한 공포, 무력감, 고통 등을 동반하는 경 우도 포함하고 있음. 동 사업이 재난 상태를 중심으로 하는 이상 장기적인 관찰과 치료를 요구하는 PTSD의 특성 상 조 기 대처 외에 장점이 없다고 할 것임.

- 또한, PTSD는 재난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행, 인권피해 등 다양한 외상경험에서 나타나는 바 동 사업에서 주된 대상으로 삼는 재난의 경우 그 결을 달리한다고볼 수 있음. 특히, 인권피해의 경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서울시는 용산 참사 사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등으로 인권 피해가 다수 나타났으며 용산 참사 사건 등은 관계자들에게 심리적 외상을 줄만큼 막대한 것이었음. 또한 이전에도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 국가적으로는 세월호 사건까지 다수 시민이 심리적인 외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계속하여 나타나고있음.
- 삼례슈퍼 살인사건5)과 같이 과거에 일어난 개인에 대한 국 가권력의 폭력이 몇 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에 나타나는 등 민주화되고 선진화된 국가 안에서도 국가권력의 폭력에 의한 인권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은 상존함. 예를 들어 인권선 진국임을 자인하는 미국과 같은 나라 역시 거의 매해 경찰

<sup>5)</sup> 발달장애인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경찰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하여 허위자백하고 이후 수감되었으나 최근 재판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었음.

- 에 의한 인종차별과 폭행 등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재난 대비용 인력양성이라는 사업목적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고 할 것임. 상시 대응의 인력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하겠음.
- 재난 대비는 예방적 차원에서는 올바른 일이긴 하나 현재 진행 중인 시민에 대한 서비스 보다 미래에 올지 모르는 재 난에 대한 보험적 성격의 사업보다는 우선순위에 있는 시민 들이 존재한다 할 것임. 따라서 사업적으로 현 시점에서 추 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다 할 것임.
- 또한, 동 사업은 문서화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심의에 제출되었고 이에 따라 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동 사업 예산 심의가 불가한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 할 것임. 이는 의회가 가진 예산심의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짐.
-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의회가 가진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우려가 존재함.

# 6) 시립병원 실태평가보고서 용역 : 통합적인 예산 편성 필요

○ 시립병원 실태평가보고서 용역사업의 경우 완공된지 30년이

상된 시설물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평가보고서 작성을 목적으로 1억2천만원 예산 편성되어 제출된 안임.

- 동 사업을 통해 13개 시립병원의 건물노후도를 파악하고 장 수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음.
- 동 사업은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사업예산을 위한 적 정성 심사 등을 마친바 있음.
- 서울의 도시기반시설 대부분이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조성되어 노후시설 비율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 10년 후 30년 이상 노후시설이 50%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후 시설물 관리의 미래 전략방안을 규정하는 「서울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가 '16년 7월 14일 제정되었음.
- 상기 조례는 노후시설물을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공공 시설물6)과 간선이상의 하수관로 중 완공 후 30년이 지난시설물로 규정되어 있으며, 5년 단위로 실태평가보고서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을명시하고 있음
- 시립병원7)은 총 13개이나 서울의료원은 분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보라매병원은 확장으로 인해 별관 동을 소유하고 있는 등 건축물이 증가한 바 있음. 서울의료원의 경우 분원은

<sup>6)</sup> 동 사업에 해당하는 시립병원건물들은 2종 시설(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병원).

<sup>7)</sup> 서울의료워을 포함한다.

1970년대에 설립되었으며, 보라매병원의 경우 87년 영등포시립병원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의 위치에 위치한 것은 91년으로 30년이 지난 시설은 아님.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8)9)10)11)의 규적을 준용하는 바 시립병원은시설물의 장수명화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임.

- 시립병원 건물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병원이 연면적 5천제곱 미터 이상으로 나타나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에서 장수명화 촉진의 대상이 되는 것 으로 나타남.
- 그러나 사업명이 적절한가에 대하여서는 의구심이 있다고 할 것임. 사업명이 "시립병원 실태평가보고서 용역"이라고 작성 된 바 이는 시립병원의 경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 성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며 예산심의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sup>8) 「</sup>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제2조(정의) 1. "노후기반시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주체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시설물과 간선 이상의 하수관로 중 완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을 말한다.

<sup>9)「</sup>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부대시설로서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sup>2. &</sup>quot;1종시설물"이란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 다.

<sup>3. &</sup>quot;2종시설물"이란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sup>10)「</sup>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시설물의 범위)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와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의 1종시설물과 2종 시설물을 말한다.

<sup>11)</sup> 별표 1의 5의 나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시립병원 건물 현황〉

αн	병원명	이 뭐	건물현황			준공	비고
연번 병원명		위 치	층 수	연면적	구조	년도	01 17
1	어린이병원 서초구 내곡동 6-7		지상6층 지하1층	14,913 m²	R∙C	2008	
2	은평병원 은평구 응암동 산6-4		지상6층 지하2층	16,544 m²	R∙C	2002	
3	서북병원	은평구 역촌동 산 31-1	지상7층 지하2층	30,149 m²	R∙C	2004	
4	동부병원	동대문구 용두동 118-20	지상6층 지하3층	22,825 m²	R∙C	2002	
		동작구 신대방동 425	지상8층 지하2층	- 27,615㎡	R∙C	1991	
5	보라매병원	(본관)	지상6층		R∙C	2003	
		(동관)	지상5층 지하2층	8,227 m²	R∙C	1996	
		신관	지상9층지하3층	39,911 m²	R∙C	2008	
6	용인정신병원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4	지상5층 지하1층	5,765m*	RC	1987	30년 경과
7	백암정신병원	용인시 백암면 용천리 264-5	지상4층 지하1층	5,404 m²	R∙C	1995	
8	축령정신병원	남양주 수동면 외방리 174-5	지상3층 지하1층	5,260 m²	R∙C	1996	
9	고양정신병원	고양 덕양구 내유동 294-2	지상3층 지하1층	6,102 m²	R∙C	1998	
10	장애인치과병원	성동구 홍익동 102	지상3층 지하1층	1,388 m²	R∙C	2005	
11	북부노인병원	중랑구 망우동 227	지상4층 지하2층	18,058 m²	R∙C	2006	
12	서남병원	양천구 신정동 1320-7	지상8층 지하4층	39,262 m²	R∙C	2011	
	서울의료원	중랑구 신내동 316	지상13층 지하4층	99,909 m²	R∙C	2010	
13		강남구 삼성동 171-1	지상5층 지하1층	27,744㎡	RC	1977	
		강남구 삼성동 171	지상4층 지하1층	5,086m²	RC	1978	30년 경과

-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 제6조12)에 의하면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뒤 종합관리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때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은 시민건강국의 사업범위를 넘어서고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 안전총괄과 산하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추 측할 수 있음.13)
- 그렇다면 시민건강국이 동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근거는 희박하다고 할 수 있음. 시유시설이기 때문에 관리 소관이 시민건 강국이기 때문이라면 추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서도 시민건 강국의 예산으로 수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비전문 조직인 시민건강국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살펴봐야 할 것임.
- 또한, 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다년간 연구용역을 통해 수행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기에 시민건강국의 사업범 위에 포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임.
- 예를 들어 시민건강국이 건축물의 관리에 대한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시공부터 시민건강국의 책임 하에 실행될 수 있 어야 함. 그러나 어린이병원 발달센터의 건립에서도 알 수 있

<sup>12)</sup> 제6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를 위한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갱신한다.

<sup>13)</sup> 이는 현재 모든 시설에 대한 실태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부칙 제2조는 최초의 실태평가 완료시기를 2019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추후 구체적인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과 관련한 활동에 대하여 실제 추진될 사업을 알기는 어려움.

듯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예산 외에 전 공정을 관리한 바 있음.

-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볼 때 '시립병원 실태평가' 사업은 집 행부의 기술전문조직이 수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임에 도 불구하고 시민건강국의 예산으로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 할 것임.
-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의 비전은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이며 발전전략은 체계적 · 선제적 · 종합적 안 전관리체계 구축이고 핵심사업은 기반시설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확립이고 세부목표가 노후인프라 체계적 관리임. 따라서 시민건강국의 사업으로 포함하기에 어려움 있다고 할 것임.
- 서울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수행가능성, 전문성, 소관업무 등에 대한 통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7) 서울특별시립병원 시스템 운영 : 예산의 중복편성 문제

- 시민건강국 내 유사 사업간 통폐합을 통해 예산지출의 효율성 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립병원 시스템 운영'의 경우 2018년 3천2백만원

편성되어 있음.

- 시립병원 보조금 예산관리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 등 시보조금 지원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운영을 목적으로 편성되어 있음. 이는 시립병원 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임.
- 또한 시립병원 보조금 예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시보조금 예산 의 편성, 집행, 정산 등의 체계적 관리 및 투명성 강화를 목 적으로 하는 사업임.
-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시립병원 보조금 집행현황 주기적 모니터링' 과제에 5천5백 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시립병원의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인 보조 금 예산관리 프로세스 구현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사업을 수행할 것을 밝히며 구체적으로 보조금 관리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여 예산 편성 외 집행, 정산 등 전 프로세스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2개 사업의 목적이 유사하며 내용상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건강국과 공공보건의료재단이 각각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구심 있다고 하겠음. 예산심의과정에서 유사사업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사업 대부분이 시립병원의 경영 및 기술 에 대한 지원역할을 하고 있기에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목

적을 고려하여 예산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짐.

### 〈공공보건의료재단 '시립병원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한 2018년 사업계획〉

구 분	예 산
[과제17] 2018 서울특별시립병원 성과평가	50,000
[과제18] 시립병원 보조금 집행현황 주기적 모니터링	55,000
[과제19] 2018 자치구 미래건강도시 평가 모델 개발(보건소평가 등)	60,000
[과제20] 퇴원후 환자경험평가 및 통합케어체계개발 연구	35,000
[과제21] 시립병원 경영현황 진단 및 컨설팅	55,000
[과제22]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의료사업 평가모델 개발	30,000
[과제23] 공공의료기관 전문적 법률지원 자문단 구성 및 운영	15,000
Я	300,000

# 8)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 : 집행부 사업과 유사사업 존재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은 2017년 설립되었으며 2018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8억3천1백만원 증가한 37억5천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비가 13억7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3.1%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인건비 역시 15억 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4천6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보건의료재단 예산〉

구 분		2017	2018 증감			
		(당초예산)	예산(안)	B-A	%	비고
	총 계	2,919,273	3,751,214	831,941	28.5	
·세요기미	인 건 비	614,074	1,560,652	946,578	154.1	
	운 영 비	1,039,449	815,562	(△)223,887	(△)21.5	
	사 업 비	565,750	1,375,000	809,250	143.1	
	기 본 재 산	700,000	ı	(△)700,000	(△)100	

- 사업비의 증가폭이 큰 만큼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함. 재단의 2018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총 3개주요목표 안에 12개의 핵심사업이 편성 및 36개의 세부사업으로 2018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그러나 재단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사업 은 집행부 사업의 유사사업이 다수 존재하며, 일부 사업의 경 우 재단이 수행하기 보다는 시 집행부를 통해서 수행되는 것 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짐.
- 재단의 사업은 연구개발, 기술지원, 평가 등으로 한정지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대시민 서비스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구심 존재함.

# 〈공공보건의료재단 사업계획〉

주요기능	핵심사업	세부과제		
	핵 심 보건의료 정 책 연 구	【과제01】시립병원 비급여 분석 및 서울시민 의료이용 보장성 강화 전략 기획 【과제02】서울시민 의료급여 이용 현황 분석 및 보장성 강화전략 기획 【과제03】서울시민 건강지표조사 설계 【과제04】서울시 보건의료정책 동향리포트 발간 【과제05】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및 활용 방안 연구 【과제06】서울시민 생애주기별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연구		
혁 신 씽 크 탱 크	건 강 빅 데 이 터 플 랫 폼 구 축	【과제07】시립병원 정보통계 시스템 구축 【과제08】서울시 건강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연구자 해커톤 【과제09】서울시 건강 빅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서 울 건 강 정 책 브 랜 드 화 지 원	【과제10】서울 건강통합브랜드 활용 강화		
	마 스 터 플 랜 수 립 지 원	【과제11】서울형 보건의료자원 MAP 구축 【과제12】제7기(2019~2022년) 서울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과제13】2018 서울시민 보건의료정책 요구도 조사		
	합 리 적 운 영 지 원	【과제14】공공의료기관 신설 및 시설투자의 평가 체계 개발 【과제15】서울시립병원 의료장비 현황 및 활용 개선방안 【과제16】공공의료확충사업 보조금 투입 타당성 평가		
전 문 기 술 지 원	평 가 및 컨 설 팅	【과제17】2018 서울특별시립병원 성과평가 【과제18】시립병원 보조금 집행현황 주기적 모니터링 【과제19】2018 자치구 미래건강도시 평가 모델 개발(보건소평가 등) 【과제20】퇴원후 환자경험평가 통합케어체계개발 연구 【과제21】시립병원 경영현황 진단 및 컨설팅 【과제22】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의료사업 평가모델 개발 【과제23】공공의료기관 전문적 법률지원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의 료 질 관리	【과제24】2018년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과제25】시립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전략 개발 【과제26】시립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 벤치마킹 및 협력학습 모델개발 【과제27】시립병원 시민체감 서비스 발굴 및 확산 【과제28】서울시민 건강패널 구축 기획 및 시범조사		
	공 공 보 건 의 료 인 재 양 성	【과제29】공공보건의료인력 대상 직무만족도 및 교육 수요조사 【과제30】공공보건의료 인재양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공 공 보 건 의 료 전달체계 확대 및 시 민참여 구조화	【과제31】서울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서울건강기금 조성 【과제32】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과제33】시민건강학교 모델 개발		
거 버 넌 스 플 랫 폼	서 울 건 강 포 럼 운 영	【과제34】서울건강포럼 운영 및 결과확산		
플 랫 폼	보건의료 자원 연계 · 협력	【과제35】서울시 보건의료자원 연계협력체계 구축		
	시 사 업 지 원	【과제36】서울형 안심돌봄 사업 매뉴얼 개발		

○ 36개의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핵심 보건의료 정책연구에의 경 우 6개의 과제로 구분되어 있음. 이때 과제내용을 살펴보면 과제1과 과제2의 경우 시민건강국이 시립병원의 비급여 수가를 관리해 왔으나 재단이 앞으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임. 이는 시민건강국 사업에 대한 지원 역할로 보임.

- 이는 연구과제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시민건강국에 대한 기술 지원적 성격이 강하므로 재단의 연구기능에 대한 낭비요소로 여겨짐.
- 마스터플랜 수립지원의 경우 시민건강국에 대한 지원의 연구를 세부과제로 편성하고 있음. 이때 제7기보건의료계획수립지원사업의 예산이 1천만원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시민건강국은 해당 예산을 이미 편성하고 있어 중복편성에 대한 우려가존재함.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9~2022) 수립과 관련하여 시민건강국은 7백5십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이중 자문및 회의비로 375만원 및 인쇄비 375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지원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과제명이 '제7기(2019~2022년) 서울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되어 있어 실제 계획수립을 재단에서 할경우 시민건강국 예산편성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임.
- '과제17 2018년 서울특별시립병원 성과평가'의 경우 사업예 산으로 5천만원을 책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민건강국의 예산

편성을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sup>14</sup>) 사업에 9천만원의 포상금을 편성한 바 있음.

- 평가업무를 재단이 고유사업화 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 해당 예산은 재단이 지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과제21 시립병원 경영현황 진단 및 컨설팅'의 경우 시립병원 성과평가와 함께 수행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이에 대하여 추 가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을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고 여겨짐.
- 마찬가지로 '과제19 2018 자치구 미래건강도시 평가 모델 개발(보건소평가 등)' 와 '과제22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의료 사업 평가모델 개발'의 경우도 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 이 타당한지 의구심이 있다고 할 것임.
- 과제 24 2018년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경우 각각 시립병원에서 수행해 온 사업으로 조사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에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병원자체조사와 재단의 조사결과간 내용타당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각 병원별 자체예산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업 편성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의구심 있다고 할 것임.
- 동 사업의 경우도 재단의 고유사업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sup>14)</sup> 이는 시민건강국의 포괄사업비이기도 함.

- '과제 26 시립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 벤치마킹 및 협력학습 모델개발'의 경우 이미 보라매병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음.
  - 보라매병원의 시립병원역량강화 사업은 서북병원 진료협력, 표준진료지침(CP) 아카데미 운영(서울의료원 외 8개 병원 참여), 간호서비스 질 향상 아카데미 운영(어린이병원 외 6개 병원), 연합 감염관리 워크숍, 연합 약제 워크숍(동부병원 외 7개 병원) 등이 실제 의료 질과 관련하여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이 외에도 재무와 원무의 발전 워크숍을 운영 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동 사업도 기존 사업의 유사중복이라고 볼 수 있음.
- '과제 34 서울건강포럼 운영 및 결과확산'의 경우 시민건강국 사업 중 '서울시민건강회의 운영'과 유사중복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임.
- 재단이 가져야 하는 기능은 정책의 개발과 연구기능이어야 하고 이에 따라 기초연구 및 시의성 있는 과제가 개발되어 수행되어야 함. 그러나 과제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제 07 시립병원 정보통계 시스템 구축'이나 '과제 28 서울시민 건강패널구축 기획 및 시범조사' 등이 기초연구에 해당하며 시의성 있는 연구도 법정계획의 수립지원(과제 12 제7기

(2019~2022년) 서울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거나 '과 제 32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등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탈원화와 이에 따른 정책연구가 시의성 있게 대응되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 점 등은 재단의 추후 사업에 있어 장기적 안목과 시의성 모두 대응하지 못하는 사업계획을통해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시민건강국의 사업과 유사중복 문제 및 시민건강국이 해야 할 사업을 대신 하는 문제가 나타나며 과제간 연결성을 확보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나 1개의 과제를 2개로 분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사업계획에 있어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9)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양관리사업(신규) : 현행 유사사 업과의 중복 가능성 및 연계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동 사업은 `17년 6월에 발표한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양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2017년 신규사업으로 3억 8천 4백만원이 100% 시비로 편성되었음.

####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양관리사업〉

(단위: 천원)

구 분		2015결산	2017예산(A)	2018예산(안)(B)	증감(B-A)
계		-	(x-) 0	(x-) 383,593	(x-) 383,593
	사무관리비	-	(x-) 0	(x-) 80,000	(x-) 8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0	(x-) 303,593	(x-) 303,593

○ 동 사업은 `18년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전에, `17년 식품진 흥기금 사업으로 사업모형 개발 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나, 연말에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사업대상자 수요 나, 구체적인 사업 모형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양관리 사업개요

#### □ 사업개요

- 근거 :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식품정책과-18437호, '17.06.20.)
- 대상 : 65세 이상 방문건강관리대상자 중 영양ㆍ의학적 고위험군 6,000명
- 연도별 추진 계획: 1,000명('18) → 2,500명('19) → 6,000명('20) ※'17년 모형개발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방 법 : (서울시)모형개발 → (자치구)사업 추진
- 연도별 추진 계획 : 5개구('18) → 10개구('19) → 25개구('20)
- 내용
- 취약계층 어르신 영양관리 사업 모형 적용 및 평가
- 영양·의학적 고위험군 대상자 맞춤 영양서비스 제공 : 임상영양사 배치
- 보충영양식품 공급체계 마련 및 지원

#### ○ 추진방법

- 자치구(보건소) 임상영양사 신규 배치를 통한 사업 추진
- 찾동·방문건강관리사업 연계를 통한 대상 발굴 및 서비스 지원
- 사업추진체계도



○ 한편 저소득 어르신 먹거리 지원은 '91년부터 시행 중이며, 현재는 복지본부에서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을 기추 진 중이며 '18년에는 244억 7천 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개요

#### □ 사업개요

- 근 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등
- 대 상 :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 연도별 추진 계획: 1,000명('18) → 2,500명('19) → 6,000명('20) ※'17년 모형개발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수행기관 : (사회복지법인 및 민간단체(경로식당 : 20인 이상 주 5회 이상 운영)
- 예산지원은 사회복지법인, 종교기관 등이 운영하는 급식시설(옥외 급식 제외)
- 지원기준

구 분	이용대상	기본급식비(1식)	특식비(1식)	비고
경로식당	60세 이상	3,000원, 월26일	4,000원, 연7회	- 특식(연 7회)
식사배달	65세 이상	3,000원, 365일	4,000원, 연7회	• 설, 추석, 어버이 날, 석가탄신일, 복날,
밑반찬배달	65세 이상	3,600원, 주2회	4,000원, 연7회	노인의 날, 성탄절

- 예산지원은 급식비(주·부식) 및 영양사 일부만 지원하고, 급식시설 운영에 따른 조리, 배식, 식사배달 등은 자원봉사인력, 어르신 일자리사업 인력 활용
- 두 사업은 전달체계가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으로 나눠질 뿐, 사실상 사업 대상자의 차이가 아직가지 명확하지 않고, 끼니 를 챙기기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먹거리를 지원한 다는 사업 목적도 거의 유사함.
  - 또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연동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거 나 추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도 동일함.
- 따라서, 두 사업 간의 조정이나 사업 내용의 공유를 통해 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미연에 막거나, 사업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대상자 유형이나 서비스 방식에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음.

# 10)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 타켓연령 전체 지원을 위한 재원 분담 확대

○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구강건강의 가장 중요한 시기 인 아동청소년에게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초등학교4학년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구강질환 치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2018년 예산은 26억 5천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4%(5억 1천 9백만원)가 늘어난 금액임.

####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단위: 천원)

	구 분	2016예산	2017예산(A)	2018예산(안)(B)	증감(B-A)
계		(x-) 2,248,000	(x-) 2,133,000	(x-) 2,652,000	(x-) 519,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20,000	(x-) 20,000	(x-) 20,000	(x-) 0
		(x-) 68,000	(x-) 63,000	(x-) 63,000	(x-) 0
		(x-) 2,160,000	(x-) 2,050,000	(x-) 2,569,000	(x-) 519,000

○ 서울시에서는 `12년부터 전국 최초로 교육청(학교), 치과의 사회(치과의원), 지역아동센터 등과 함께 지역 '민·관·학'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 대상으로 구강검진, 보건교육, 예방진료 등 필수적인 예방중심의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학교보건법에 시행되고 있는 학생구 강검진의 미흡한 사후관리 보완대책으로 초등학교 4학년 학 생치과주치의사업과, 지역별 치과의사회 소속 치과의원 지역 자원의 자발적 참여로 의료지원 우선순위, 예산배분 등에 관 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역협의체 운영으로 예방 진료에서 심화치료까지 원스톱 개념의 저득층 아동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서울시, 2016).

####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개요

#### □ 사업개요

○ 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43조, 구강보건법 제7조

○ 대상 : 초등학교4학년(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아동)

※ 아동 : 만18세미만 지역아동센터 및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내용 :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 치료

- 구강검진 및 보건 교육 : 문진, 구강위생검사(PHP 검사),불소이용 등

- 예방진료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 구강질화 치료 : 저소득층 아동 대상 충치치료, 신경치료, 발치 등

○ 협력기관 : 교육청(학교), 치과의사회(치과의원), 지역아동센터 등

○ 추진절차



※ 치과주치의 참여치과 의원 1,419개소 / 전체 4,744개소

○ `12년 6개구가 참여로 시작된 사업은 `15년엔 10개구, `16년엔 19개구로 늘어나서 `17년에는 25개 전 자치구가 참여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구강건강 사업으로 자리매김하 고 있음.

####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추진 성과〉

연	실 적 (명, %)			예산	심화 치료	참여		
토	누계	학생	아동	비율	( <b>백만원)</b> 샤비100%	지료 (명)	참여 자치구	
12	11,734	3,236	8,498	41.9	1,475	-	시범운영	
13	30,806	17,354	13,452	110.0	1,505	3	(6개구)	

14	30,204	15,723	14,481	107.9	1,405	7	
15	34,056	19,908	14,148	109.8	1,505	17	10개구
16	43,379	30,995	12,384	96.3	2,248	23	19개구
17	41,447	31,178	10,269	92.7	2,133	14	25개구
계	191,626	118,394	73,232	93.1	10,271	64	

- 특히 `16년말에 학생 치과주치의 전산화 프로그램인 '전문 구강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17년 7월부터 성동구 서울 금호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18년에는 4 개권역별로 1개구씩을 선정하여 전산화 시범적용을 추진할 계획임.
- '전문구강관리 플랫폼'은 가정·학교·보건소·치과병의원·지역아 동센터 등을 연계해 서울시내 아동 3만명의 구강의료 데이터를 공유, 대상자 입장에서 맞춤형 정보를 간편하게 얻을수 있도록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16년 2월 서울시·㈜카이아이컴퍼니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최하는 '정보문화 실천운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외부 편당과 민간 재능기부를 통해 비예산으로 3억 3천만원(업체측산정)에 달하는 사업을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추진한 긍정적인 예산 절감 사례이자, 향후 동 사업의 운영 효율성과이용자 만족도를 한 단계 높여 2단계 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전산화 프로그램 구축 관련 기관별 투입 예산 및 역할〉

(단위: 천원)

구 분		정부출연금 (한국정보화진흥원)	㈜카이아이컴퍼니	서울시
총 예산액	330,000	30,000	300,000	비예산
역할		재원	기술 및 재원	정보 및 인력지원

- 또한 `17년 25개 전 자치구로 지역 확대 이후, `18년에는 대상자 확대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의 경우, 초등 4학년 전체(7만 4천명)의 75%에 해당하는 55,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임.
- 대상자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증가액이 크지 않은 이유는 올해까지 100%로 시비사업으로 시행하던 것을 '18년부터는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예산을 구비로 확보하도록 하였기 때문임.

## 〈`18년 예산 세부 내역〉

(단위: 천원)

내 역	예산	서울시	자치구
계	3,182,000	2,652,000	530,000
기간제보수(시비100)	20,000	20,000	0
사무관리비(시비100)	63,000	63,000	0
아동심화치료 및 인건비(시비100)	449,000	449,000	0
학생치과주치의(시비80:구비20)	2,220,000	1,776,000	444,000
아동치과주치의(시비80:구비20)	430,000	344,000	86,000

○ 나머지 25%의 초등 4학년 18,500명의 예산 7억 4천만원 은 학생치과주치의 거버넌스의 한 축인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전체 초등 4학 년이 모두 사업대상일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됨.

#### 〈초등 4학년 전체 확대시 소요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총계	서울시(50%)	교육청(25%)	자치구(25%)
금액	2,960,000	1,480,000	740,000 (+232,360)	740,000

○ 한편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재정보상을 받으면서도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받는 등의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될 소지 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나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11)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 정부주도 모델 도입으로 인한 국비 지원 확보 방안 필요

○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은 25개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은 235억 2천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가치매제 시행으로 현행 서울시와 자치구의 5:5 매칭으로 운영되던 지역센터에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전년 대비 146%(139억 8천 3백 만원)가 증액되었음.

####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단위: 천원)

구 분	2016예산	2017예산(A)	2018예산(안)(B)	증감(B-A)
계	(x579,000)	(x1,052,897)	(x15,092,219)	(x10,039,322)
	8,573,037	9,543,814	23,526,720	13,982,906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579,000)	(x1,052,897)	(x15,092,219)	(x10,039,322)
	8,573,037	9,543,814	23,526,720	13,982,906

- 치매관리정책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2006년 12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광역치매센터를 개소하고, 2007년에 강동·마포·성동·성북구에 자치구치매지원센터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치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정부에서 추진 중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치매안심센터는 현행 치매지원센터를 모델로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현재 전 체 광역시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광역치매센터 역시 서울 시광역치매센터를 벤치마킹한 것임.
- 한편 국회에 제출된 `18년 정부예산안의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비 편성내역에 따르면 서울시 센터에는 운영비 지원만 편성되어 있을 뿐, 설치비나 시설개보수 비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17년 추경 및 `18년 계획안의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비 편성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편 성 내 역
2017년 추경	○ 치매안심센터 설치 . 운영 - (치매안심센터 설치) 205개소 × 750백만원 × 80% = 1,230억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 205개소 × 1,375백만원 × 1/12개월 × 80% = 187억 9,200만원
2018년 계획안	○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 (서울) 25개소 × 1,100백만원 × 50% = 137억 5,000만원 - (지방) 227개소 × 1,100백만원 × 80% = 1,997억 6,000만원

- 일례로 광역센터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에서 `12년 4개 권역센터, `13년부터는 서울시를 포함하여 광역센터를 지정하고 설치비를 지원하였음에도, 기 설치했다는 사유로 인해타 시도에서 국비지원을 받은 6억 6천 5백만원(9.5억원×국비보조율 70%, `13년 기준)의 설치비를 전혀 보전받지못하였음.
- 보건복지부(2017.10)의 "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를 살펴보면, 치매안심센터 시설은 보건소 리모델링·증축 등을 통해로비, 사무실, 교육상담실, 검진실, 쉼터 및 가족카페 등을 800㎡(242평) 규모로 마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 치매지원센터들의 시설기준은 430㎡(130평)으로, 그나마도 장소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이 5곳이며, 구 소유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장 여유공간이 부족으로 규모를 늘리는 것이 여의치 않는 센터가 다 수인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센터 운영은 자치구별로 보건소에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 센터 25개중 24개가 위탁운영 중임. 다만 `18년에는 기 설치 센터에 한하여 위탁운영을 허용하겠다는 변경지침이 내려온 바 있으나이 역시 한시적인 것으로, 직영운영 시 현재 평균 10명에서 노인인구 대비 15~20명으로 확대하여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원으로 채용해야하는 부담이 남아 있음.

#### 〈서울시 치매지원센터와 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침 비교〉

구분	기존(서울시/2017)	변경(복지부/2017)
명칭	치매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서울시는 18년부터 변경예정)
재원	시50:구50	국50:시25:구25
운영 형태	지역 또는 위탁운영	직영원칙, 기설치센터 '18년 위탁운영 허용(변)
시설 규모	430㎡(130평/초기 150평) 이상	800㎡(242평) 권장, 공공시설 내 독립공간 원칙
운영 인력	평균 10명 센터장, 팀장(1개), 팀원 치매교육 이수 우대/ 채용 후 필수	15~20명(노인인구 대비) 센터장, 부센터장, 팀장(5개팀), 팀원 치매교육 이수 우대/ 채용 후 필수 (직영 시, 시간선택제 5년 한시 허용)
인력 구성	- 직군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음악.미술치료사, 운동처방사 등(직종을 규정하지 않고 다양) - 위탁 : 센터장과 근로계약 - 직영 : 공무원, 시간제공무원 등	- 조직, 직종, 경력 등 세분화 - 직군 : 간호사 1인 필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 무기계약직 채용 원칙, 시간선택제 공무원 혹은 임기제 공무원 가능, 치매지원센터 직원의 고용승계의 경우 자격기준 완화(변)

- 국회 예산정책처(2017.10)에서는 동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지역별 여건이 상이하기 지방자치단체 별로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재원 조성, 리모델링·증축 등이 적시에 완료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운영보델 및 차등적인 인력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음.
- 지금까지 치매관리 정책은 서울시가 정부보다도 앞서 선도 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18년 집행될 치매안심센터 역 시 서울시 치매지원센터를 기초로 전국 시행 도입을 준비하 는 과도기적 단계임.
- 따라서 서울시의 특성에 대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어필 하여 특히 설치비나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을 충분 히 받을 수 있도록 대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협력이 이루 어져야 할 것임.

# 3.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 가. 시민건강국 소관 기금운용 개요

○ 시민건강국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 운영 중이며, 동 기금의 2018년 기금운용계획은 98억 9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1천만원이 감액(△9.3%)된 것임.

# 〈기금운용 수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예산(A)	2018여신(안(B)	증감(B-A)	비고
		계	10,902	9,892	△1,010	
	0	l자수입	161	132	△29	금융이자 감소
		공공예금이자수입	150	128	△2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1	3	△8	
세외 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1,500	1,756	256	과징금 증가
		과징금	1,500	1,756	256	
	기타수입		50	57	7	
		시・도비반환금수입	50	57	7	
	융	·자금원금수입	1,500	405	<b>△1,095</b>	원금 감소
L 73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500	405	△1,095	
보전 수입 등및	여	l치금회수	6,641	6,647	6	
중호   내부   거래		예치금회수	6,641	6,647	6	
7   -	여	탁금및예수금	1,050	895	△155	금융이자감소
		예탁금이자수입	1,050	895	△155	

- 기금운용 수입 감액의 주된 이유는, 민간융자금 회수(10억 9천 5백만원) 로 융자성 사업비가 감액되었고, 예탁금 이자수입(1억 5천 5백만원) 및 공공예금이자수입(2천만원) 등 금융이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임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61조제1항,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4조 에 의해 그 사용목적을 정하고 있는데.
  - 이에 따른 `18년 사업성 예산은 융자사업인 '식품위생업자 민간융자지원 ' 사업을 포함하여 총 17개 사업, 55억 5천 2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7억 7천 6백만원이 **증액** (47.3%)되었음.
  - 17개 사업 중 자치단체 징수교부금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는 자치구에서 징수한 과징금을 시와 자치구가 4:6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자치구분이 시로 잘못 들어온 경우, 다시 자치구로 돌려주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임.
  - 식품진흥기금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식품위생업자 민간융자지원사업이 원활한 사업집행 및 지원 대상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7년도 5억원에서 '18년에는 20억원으로 15억원 (300%)이 증액되었음.
  - 'GMO식품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 사업(△1천만원) 이 폐지되었으나 식품안전관리사업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총 3천 3백만원 늘어났으며, 이에 반해 음식문화개선사업은 1억 7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예치금, 예탁금 등의 재무활동비는 `18년에는 43억 3천 4 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27억 8천 6백 만원(△38.8%)하였으며, 기금관리를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5백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함.

## 〈기금운용 지출계획〉

(단위: 천원)

구 분		구 분	2017예산(A)	2018예산(안)(B)	증감(B-A)	비고
	계		10,902,120	9,892,087	△1,030,033	
	식품안전 위생 관리(사업비)		3,776,892	5,552,937	1,776,045	
		위생관리시설개선 융자사업	500,000	2,000,000	1,500,000	
		식품위생업자 민간융자지원	500,000	2,000,000	1,500,000	계속
	교	육홍보사업	647,460	627,600	△19,86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73,460	68,600	△4,860	계속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 교육비 지원	574,000	559,000	△15,000	계속
	식	중독 예방사업	175,000	195,000	20,000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175,000	195,000	20,000	계속
	음	식문화개선사업	1,604,116	1,497,092	△107,024	
		음식문화 개선	810,000	382,000	△428,000	계속
		덜 짜고 덜 달게 실천 배움터 운영	210,000	297,000	87,000	계속
		서울시민 나트륨·당 섭취 저감화 환경조성	584,116	668,092	83,976	계속
		먹거리 통계 및 기반구축	0	150,000	150,000	신규
	식	품안전관리사업	799,316	832,245	32,929	

구 분		2017예산(A)	2018예산(안)(B)	증감(B-A)	비고
	식품안전정보(FSI)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 보수	101,495	96,745	△4,750	계속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구 식품안전통합인증제 운영)	25,800	105,000	79,200	계속
	식품안전 전문교육	44,600	44,600	0	계속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314,700	293,300	△21,400	계속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지원	24,600	24,600	0	계속
	서울시민 식품안전체계구축	173,388	149,000	△24,388	계속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 교 육 운영	104,333	119,000	14,667	계속
	GMO식품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	10,400	0	△10,400	폐지
자	치단체 징수교부금	20,000	20,000	0	
	자치단체 징수교부금 (자치 단체 이전)	20,000	20,000	0	예비비성
조	사연구사업	31,000	381,000	350,000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 야 종합평가	31,000	381,000	350,000	계속
	재무활동비	7,120,228	4,334,150	△2,786,078	
예	치금	7,120,228	4,334,150	△2,786,078	
	반환금 기타	30,000	30,000	0	
	예치금	7,090,228	4,304,150	△2,786,078	
여	유자금 예탁금	0	0	0	
	예탁금	0	0	0	
	행정운영경비	5,000	5,000	0	
기	금관리비	5,000	5,000	0	
	기금관리비(사무관리비)	5,000	5,000	0	

## 나.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검토의견

#### 1) 기금운용의 적합성 문제

-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제도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어짐.
- 하지만,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재정의 투명성도 담보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우선순위 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운영 중인 기금에 대하여 그 존속의 필요성을 재평가해 볼 필요 가 있다 하겠음.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따라 식품의 위생을 강화하고,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1989년에 설치되었음.
- '18년 동 기금은 상기 목적달성을 위하여 융자성 사업인 위 생관리시설개선 융자사업(20억원)과 비융자성 사업인 교육 홍보사업 2건, 식중독예방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4건, 식

품안전관리사업 7건, 조사연구 사업을 포함한 16개 사업, 35억 5천 3백만원, 재무활동비 43억 3천 4백만원, 기금 금관리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총 98억 9천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18년 기금 운용 지출계획 〉

(단위: 백만원)

계	비용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재무활동비	기금관리비
9,892	3,553	2,000	4,334	5

- 그런데, 동 기금에서 추구하는 설립목적은 일반회계 운용의 취지와도 부합하며, 기금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 또한 일반회계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재정 운용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동 기금 운용 존 속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일례로 시장 요청사항으로 16년부터 시행한 "GMO식품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사업의 경우, '17년 본예산에 신규 편성되었던 "Non-GMO 바른 먹거리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사업과 중복사업이라는 사유로 '18년 기금안에서 폐지되었는데, '18년 본예산안에서도 예산과에서 GMO식품의위해성에 대해서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편향된 정보전달이나 홍보는 타당치 않다는 사유로 불수용하여 GMO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못한 바 있어, 일반예

산과 기금의 용처에 구분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사유를 명확히 해야할 것임.

# 2)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용자지원사업 : 지속적인 불용과 감 액으로 사업 집행에 차질 발생

○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사업"은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나 영업소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 융자지원을 하는 동 기금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18년 예산액은 2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억원이 증액(75.0%)하였음.

####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사업 예산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2017예산(A)	2018여산(안(B)	예산(안(B) 증감(B-A)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	500,000	2,000,000	1,500,000	
민간융자금	500,000	2,000,000	1,500,000	계속

○ 동 사업의 `18년 예산이 전년에 비해 3배(20억원)나 늘어 난 이유는 사업저조에 따른 낮은 집행율을 사유로 매년 예 산을 감액하여 `17년에는 가장 적은 규모인 5억원으로 편 성되었는데, 사업집행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 레 시행규칙」제13조에서 정한 융자 한도액이 식품제조업 소 시설개선자금이나 HACCP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시설 개선자금의 경우 업소당 8억원 이내로 총 융자규모보다도 커서 실제 금융기관에서 융자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융자규모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늘려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총 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가능한 금액만 융자하는 경우에도 소수의 대상자에게만 기회가 돌아가기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임.

#### 2017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안내

□ 융자규모 : 총 5억원

#### □ 융자대상 및 조건

구분	대상	융자 한도액	이율	상환방법
	식품제조업소	업소당 8억원이내	연2%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일반휴게제과점위탁 급식영업	업소당 1억원이내	연2%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시설개선자금 *총소요금액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업소당 2천만원이내	연1%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80%이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업소당 3천만원이내	연1%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업소당 8억원이내	연1%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업소당 5천만원이내	연2%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음식점 운영자금	관광식당	업소당 5천만원이내	연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sup>※</sup> 융자대상은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서울시 소재 영업자에 한함

<sup>※</sup> 융자제외 대상

<sup>-</sup> 호프집·소주방·단란주점·유흥주점·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융자가능)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상환방법 :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취급은행 : 우리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 지점

#### □ 융자신청

○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 자치구보건소 보건위생과(또는 위생과)에 비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등

○ 신청장소 : 영업장 소재지 관할보건소 보건위생과(또는 위생과)

- 식품제조업소, 일반·휴게·제과·위탁급식영업 등의 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 관광식당의 육성자금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민간융자지원 사업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했던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경기침제로 인해 사업지원 대상인 영세자영업자들이 시설 설비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대다수가 자기 소유의 영업장이아닌 전세나 임대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설비투자에대한 기대이익이 없어 융자금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민간융자지원 사업의 이자율이 여타 융자 상품과 비교하여 별다른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볼 수있음.
- 또한 융자금을 시설 개보수 자금 등 정해진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융자금 회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금고 (우리은행)에서 담보물 설정 등에 대해 까다로운 조건을 내 세우고 있어 실제 시설 개보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도 융 자금 지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등 융자금 지원 대상 기준

선정 등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함.

#### 〈결산 및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연도	최종예산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2013	4,000,000	0	3,000,000	2,024,000	976,000	67.5
2014	3,000,000	0	3,000,000	818,000	2,182,000	27.3
2015	3,000,000	-25,000	2,975,000	330,000	2,645,000	11.1
2016	2,000,000	0	2,000,000	215,000	1,785,000	10.8
2017.10월 말	500,000	0	500,000	349,200	150,800	69.8

- 따라서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불가피한 증액이라고 할 지라도, 동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융자조건이나 대상자 확대, 홍보활동 등을 통해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나, 사업의 목적에부합하는 용도로 융자금이 활용되어야 하고 또한 융자관련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시금고의 보수적인 성향을 고려할 때,현재의 사업 내용이나 까다로운 융자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전문적인 컨설팅이나 연구용역 등을 통해 민간융자지원 사업을 포함한 기금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3) 일반예산 사업의 기금편성 문제 : 예산·회계제도의 원칙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의회 예산심의권 약화 우려

○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 먹거리 마스터 플랜을 수립(시장방침 제139호, 식품정책과-18437호, '17.6.20.)하고, 마스터플랜 26개 세부과제 중 신규 7개 사업의 연내 추진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변경을 통하여 '17년 사업예산 7억 5천 5백만원을 확보한 바 있음.

# (`17년 기금변경 세부사업 내용 및 `18년 예산(안) 반영여부) (단위: 천원, %)

사 업 명		주 요 내 용	`17 기금 변경	`18 예산(안)
1	생애주기별 - 식생활 평생 교육 '맛 태교부터 맛 실버까지' 추진 다른 식생활 평생교육 운영(자치구): 2('17)⇒25('18)⇒50('19)⇒75('20) 다체험교육, 음식수업 무체험터 운영(자치구): 10('17)⇒12('18)⇒15('19)⇒25('20)		94	기금
2	- 서울 먹거리 통합 정보(FTI,Food Total Information)포털 사이트 운영 모든 정보가 한 곳에 "서울		40	일반
3	정보공간 마련 등  막거리취약계층 - 먹거리 취약계층 실태 조사 : '17. 6 ~ 12월, 18만가구  막거리 지원 - 먹거리 취약계층 발굴 : 4,000명('18)⇒6,000명('19)⇒8,000명('20)		200	미편성 (복지본부) 10억 ↑

4	赊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ul> <li>▶ 허약노인 발굴 :         <ul> <li>25,120명('18)⇒45,000명('19)⇒45,000명('20)</li> <li>▶ 허약노인 지원 :                   1,000명('18)⇒2,500명('19)⇒6,000명('20)</li> <li>- 허약어르신 및 만성질환자 영양관리를 위한 노인 전문 임상영양사 배치</li> </ul> </li> </ul>	60	일반
5	사회적 취약계층, 다문화 기정을 위한 음식공동체 활성	- 공동부엌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 음식시민학교 공간구성 및 운영방안 등 개발 - 다문화 음식공동체 결성 및 운영지원 ▶ 2개소(17) ⇒ 3개소(18) ⇒ 5개소(19)) ⇒ 6개소(20)	253	일반
6	안전관리를 통한 집단 급식소 식 <del>중</del> 독 사전 차단	<ul> <li>서울시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진단 시스템 개발</li> <li>서울시 집단급식소 식중독 위해예방진단 컨설팅 시범 운영 및 확대</li> <li>거버넌스 구축, 식중독 예방관리 전담인력 확보, 역량강화 교육 등</li> </ul>	88	기금
7	시민먹거리 지킴이 1만명 양성	- 1만 시민 먹거리 지킴이 모집 ▶ 3,000명('17)⇒5,000명('18)⇒7,000명('19)⇒10,000명('20) - 분임장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등	20	미편성 (비예산 전환)
	<b>계</b>			755

○ 집행부는 기금변경 사유로 마스터플랜 수립이 `17년 예산안 편성 이후인 `17년 6월에 이루어져 `18년 마스터플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 예산을 부득이 기금변경을 통해 확보하게 되었으며, `18년에는일반예산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러나 실제 `18년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서는 7개 중 3개 사업만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개 사업은 기금에서, 나머지 2개 사업은 기금예산을 통한 사업 투입되었음에도 미편성되었음.
- `17년부터 `20년까지 추진될 중기 종합계획인 "먹거리 마스터플랜"은 `15년부터 2년이 넘는 준비 기간을 통해 수립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문제를 사유로 기금변경을 통한 사업예산 확보하고, 확보한 예산으로 사전 준비 사업을수행하고도 `18년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거나, 기금사업으로 편성하는 등 계속사업은 일반예산에 편성해야하는일반 원칙 등을 훼손하고 있음.
- 예산은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고 집행해야 하는 반면 기금은 예산과는 달리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독립적·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통한 기금 심사는 상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그 결과 기금 관리가 부실해지면서 기금 사용 부진 내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예산 부족 및 시급성 등을 핑계로 다라는 이유로 일반예산 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용도를 임의 로 확대 해석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금목

적외 행사성 사업비 집행 사'15년 서울김장문화제 김치산업 전이 가장 대표적인 건임.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이 `15년 개정<sup>15</sup>)된 바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주요개정 사항

#### □ 기금설치 제한 및 정비

-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법 제3조)
- 법정 의무적 기금(재난·재해 등)외 모든 기금의 일몰제 적용(5년), 5개년 단위 기금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관리 강화(법 제4조, 부칙 제7조)/ 일몰제 신설 이전에 설치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12.31.로 규정함
- 자치단체는 법정기금의 폐지·통합이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조 치 요청, 행정자치부장관은 관련부처에 통합·폐지 요청(법 제15조)
- 기금 수 축소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러 기금의 목적을 수행하는 포괄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법 제15조의2)/ 예) 노인복지기금+장 애인복지기금+아동복지기금⇒(가칭) 사회복지기금

## □ 기금 수입·지출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 강화(법 제6조)

- 기금은 소속 공무원에게만 위임토록 함(민간위탁 금지)
- 기금의 수입·지출 등은 예산과 같이 정보시스템으로 사용 의무화

#### □ 기금관리 운영의 계획성 강화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규
   모 축소 (정책사업의 50/100 이하 → 20/100 이하) (법 제11조)
- 출납폐쇄기간 변경(익년 2.28 → 당해연도 12.31) (법 제7조)

<sup>15) 2015.7.6.</sup> 의결. 2016.1.1. 시행.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방기금법 개정

- 특히 동 식품진흥기금 변경 건은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먹 거리마스터플랜"의 `18년 본격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성격 의 사업들을 신규로 편성하는 내용임.
  - 따라서 「지방기금법」 제3조 및 제11조 등의 개정 취지 및 금 번 기금변경안의 목적과 향후 "먹거리마스터플랜"의 지속적 추진 등을 고려할 때, 기금보다는 의회의 심의를 통한 일반예 산으로 추경 편성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임.
- 또한 식품진흥기금의 `17년도 정책사업비는 총 37억 7천 7백만원으로 이의 20%는 7억 5,538원만원에 해당하는데, (최종 7억 3천 3백만원으로 감액되었으나) 최초 기금변경안의 규모는 7억 5천 5천 5백원만원으로, 기금변경안규모가「지방기금법」제11조의 지방의회의결 규정을 근소한 차이(37만 8천원)로 벗어나의회의기금 심의권을 우회통과하려는 시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기금 운용 및 변경에 있어 일반예산 편성 보다 수월하다 는 이유로 목적외 사용 등의 유사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 금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